

軍縮 國際法の 展開에 관한 研究

金宇城
법학과

<요 약>

군축의 법적위치나 군축조약형성과정의 분석도 군축을 실현하는 제조건의 고찰없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안전보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군축은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고 평화적 변경의 요청도 그 촉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국제연합체제 하에서의 군축원칙 내지 군축의무를 기저로 한 군축국제법체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국제법의 새로운 전개도 군축법을 발전시키는 요건을 조성하였고 그 형성을 측면으로부터 촉진시키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은 국제연합에서 국제법상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고, 평화적 생존권과 발전의 권리는 개인이나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것을 인권으로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군비경쟁과 군사화에 의한 인권의 침식작용의 진행 속에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국가가 군축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군축의 조건과 그것을 촉진시키는 국제법의 전개가 구비되었다라든가 그로부터 자동적으로 모든 국가의 군축(교섭)의무가 이행되고 전면완전군축이 달성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군축교섭의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군축조약교섭을 촉진시키는 힘은 핵전쟁에 의한 인류파멸을 인식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비롯하여 인권의 옹호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국민의 소리를 결집한 국제여론에 의거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여론의 역할의 주요성은 이미 국제연맹시대에 "정신적 군축"이라고 일컬어져서 일찍부터 인정되고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론은 더욱 중시되게 되고 적극적으로 군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군축교육과 매스미디어의 이용이 중요시되고 2차에 걸친 국제연합군축특별총회의 개최는 이러한 여론과 이것을 결집시킨 조직체로서의 군축비정부조직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군축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군축법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제국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특히 군축조약에 관한 국가의 의견과 의사는 국가간의 교섭을 통하여 또는 국제회의에서 표명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의 국가대표의 발언은 군사동맹과 핵억제라는 구태의연한 안전보장관과 국익에 근거하는 것에 기울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축법의 전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론과 군축비정부조직이 각각 자국의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것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군축조약 작성과정에 있어서 즉 군축교섭과 국제회의에 있어서 국가대표에 의한 의사의 표명을 감시하는 체제가 확립되고 특히 여론의 호소가 직접 국제회의 등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축조약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것으로 위반 및 분쟁해결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

다. 모든 분쟁이 우호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사국간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3자의 개입을 예정하는 것으로 금후의 군축조약의 이행확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성립되는 군축조약일지라도 그 성과 및 이행은 모든 국가의 관심사이며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제기구 등의 관여가 장래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군축조약의 이행의 검증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관여가 기대된다.

A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 of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Kim, Woo-Sung
Dept. of Law

<Abstract>

It is widely believed that arms races always end in war. It is therefore an equally widely held belief that disarmament i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Failure to achieve disarmament, then, would leave no alternative but a resort to force. It must be clear by now, however, that disarmament will not automatically guarantee peace. The equating of armaments with war and of disarmament with peace, is naive.

Even if all nations were suddenly to agree to scrap their arms, international quarrels would continue. For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groups, whether nation-states or smaller groups within nations, are endemic in the organization of society and the varying values that hold. In a completely disarmed world, such differences might be settled at first only with fists.

After the bloody World War I, just as today, it was a staple of popular opinion that if nations were not disarmed, the world would destroy itself in another war. Confronted with the unprecedented destructiveness of modern weapons, people in our times have too frequently overlooked or forgotten the impact World War I had on the generations surviving that four-year inferno.

It i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during the years between 1919 and 1939, a great deal of attention and energy were focused on eliminating the dangers of another war, by institutionalizing collective security in the League of Nations seeking to negotiate disarmament agreements — and even outlawing war itself. The desire to avoid a slaughter was as intense then as it is in our own age.

Total disarmament, in short, remained a popular slogan productive of many

words and not a little self-righteousness, but no concrete results. For it was technically and politically unfeasible, defeated by its very insistence on comprehensiveness. Approaching a complex issue — which concerned the security, if not survival, of nations — with a simplistic “all or nothing” formula, it was foredoomed to defeat. But it provided an abundant source of propaganda and shrewd gamesmanship — and that was, after the very essence of the battle for disarmament.

一. 序 論

軍縮問題를 國際法的 側面으로부터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먼저 軍縮의 意味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軍縮이란 disarmament의 번역어이지만 그 의미는 반드시 一義的인 것은 아니다. 軍縮은 國際聯盟時代에는 一般的으로 軍備의 削減(reduction) 즉 軍隊, 武器, 軍事費등을 現狀보다 줄이는 것, 혹은 軍備의 制限(limitation) 즉 그것들을 정해진 數量을 초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國際聯合時代에 들어와서 核武器의 出現을 契機로 하여 그 생산이나 저장의 폐지라든가 全面的完全軍縮이라는 用語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軍縮은 軍備의 撤廢(elimin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美國 國防省의 軍事用語事典에 의하면 軍縮이란 「軍事編制」의 國際協定에 의한 一定水準에의 削減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軍縮의 意味를 반드시 軍備撤廢만으로 좁게 限定하지 않고 國際聯合의 여러 가지 공개토론과 文書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넓은 의미 즉 軍備, 軍隊, 軍事支出의 規制(regulation), 制限削減 및 撤廢에 관하여 넓은 범위의 措置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또한 무기의 開發, 實驗, 生産, 配置, 展開, 擴散 및 移轉 또는 使用의 制限 혹은 禁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軍縮과의 比較에 있어서 「軍備管理(arms control)」라는 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것은 軍備競爭의 완화나 그 措置를 가르치고, 때로는 軍備의 量的削減 또는 撤廢를 意味하는 軍縮措置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軍隊나 軍備의 削減을 가능하게 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軍備管理의 特徵은 오히려 주요한 敵對國間의 軍事能力의 均衡을 유지하고 國際軍事環境의 불안정화를 피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관리에 있다고 하겠다.

軍縮과 軍備管理의 兩者는 각각 그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國際平和와 安全保障과의 관계에서 갖는 意味가 다르고 또한 法的接近方法에 있어서도 그 구별은 중요하다. 軍備管理概念은 일응 구별하자면, 軍備撤廢나 全面完全軍縮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일정한 제한이나 삭감을 定하는 部分的措置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軍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軍縮과 國際法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軍縮은 一般的으로 國家가 스스로 軍備를 制限하고 削減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가 다른나라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형태로 실현된다. 즉 國家가 國際法上 一定한 軍縮을 義務화하는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지만 國家는 이러한 法的義務를 지지 않더라도 자주적으로 自國의 軍備를 삭감 내지 철폐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一方의 軍縮은 한편으로는 軍縮의 理想形態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한편으로는 一般的으로는 永續性이 없고 그 國家의 自主的判斷으로 再軍備로 되돌아가기가

쉽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法的保障이 없이는 제지는 어려운 일이다. 역으로 그 제지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비로소 군축과 국제법과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軍縮은 一般적으로 國際的約束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軍縮이야말로 國際社會의 여러 가지 條件 가운데서 永續性을 가지며 그 實現의 法的保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軍縮과 國際法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대개 國家間의 條約으로 표현된다. 一定한 軍縮의 規制 내지 撤廢에 관하여 상호적으로 義務를 지는 형태의 兩國間 또는 多數國家間條約으로부터 一定한 國家에만 義務를 課하는 條約까지 存在한다. 오늘날 이런 類의 條約의 數는 상당수에 달하며 이들이 각기 갖고 있는 法的意味나 그 限界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軍縮의 國際法의 檢討는 이들 條約만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條約內容을 分析하는 전제로서도 軍縮의 시도가 國際社會의 전개에 수반하는 國際法의 發展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는가. 즉 점차로 군축이 國際法上 보편적인 성질의 것으로 수용되어졌는가, 國際法上 軍縮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義務같은 것이 개개의 條約에 의한 法的拘束에 앞서서 存在하는가 등등의 문제는 國際法의 歷史的發展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要컨데 軍縮의 法的位置나 軍縮條約形成過程의 分析도 軍縮을 實現하는 諸條件의 고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군축과 安全保障이나 發展과의 관계, 軍縮實現을 위한 最近의 國際聯合이나 여론의 役割에 대하여 最近의 國際聯合 軍縮特別總會나 反核運動의 議論등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二. 軍縮의 現代의 課題

현재 國際平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한편으로는 核強大國들 사이에서 軍備競爭이 제한없이 확산되어 量質, 兩面에 있어서 이상적인 核軍備의 擴大가 점점 더 그 템포를 빨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核軍備競爭을 방지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軍縮交渉이 정지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선진공업국으로부터 發展途上國에로의 武器輸出의 급속한 증대이다. 그것은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전쟁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쌍방이 근대적 무기를 사용한 대규모적인 軍事的衝突을 반복할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한쪽이 核武器를 가지게 된다면(그것은 이제는 비현실적인 空想이 아니다), 核戰爭에의 위기적 상황을 한층 더 惡化시킨다.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Barnaby박사는 「증대하는 核戰爭의 可能性」이라는 논문에서 현재의 核軍備競爭의 위험을 극명하게 분석하고서 「오늘의 세계에서 軍縮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核戰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짓고 있다.¹⁾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軍備競爭과 軍縮을 둘러싼 오늘날의 問題狀況이다. 軍縮 특히 核軍縮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軍縮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軍縮이 오늘날까지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

1) Frank Barnaby, The Mounting Prospects of Nuclear War, A Report of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977.

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軍縮交渉의 정체의 원인이 軍縮이라는 태두리 속에 있다면 즉 軍縮에 의하여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 軍縮에 관해서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반대로 문제의 해결은 軍縮 이외에는 없고 더욱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軍縮交渉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여 軍縮의 실행에 새로운 轉機를 만들어서 軍備撤廢 특히 核軍備의 撤廢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구조를 설정하고 실천적으로 무엇을 제안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軍縮이 평화의 수단으로서 진정한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軍縮의 이데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必要가 있다. 군축이라는 disarmament는 語意的으로는 armament에 대립하는 것으로 軍備의 撤廢 혹은 武裝解除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의 軍備를 완전히 廢止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思想에서 實제상의 用語法으로서의 disarmament는 軍備의 削減, 制限, 凍結, 禁止, 規制, 管理 등 대단히 多義的인 내용을 포함하고 사용되어 왔다.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軍縮은 實제에 있어서는 軍備規制 혹은 軍備管理였다. 그것은 軍備撤廢를 의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軍備全廢案이 제안된 바는 있지마는 (예를 들면 1959년의 흐루시초프의 軍備全撤廢案과 그로부터 유도된 西方側三段階軍備撤廢案) 그것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의 탐구가 이루어져서 그 프로그램이 실천에 옮겨진 일은 없었다. 더욱이 軍備全廢案은 상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自國의 평화의도를 선전하고 軍備競争에 있어서 自國의 立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軍備全廢案은 절대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와같이 실제로 협정된 軍縮은 軍備의 撤廢가 아니고 軍備의 規制 즉 管理로서 軍備競争의 일시적 휴전(1921년의 워싱턴 海軍協定) 혹은 배후의 軍備競争을 은폐하는 수단(예를 들면 SALT-미소전략무기 제한 교섭) 등이었다. 그리하여 軍備의 削減, 凍結, 制限 등의 措置는 그러한 軍備管理의 수단이었다.

軍縮이 實제에 있어서는 軍備管理였다는 것은 軍縮의 내용에 따라서 軍縮問題 자체에 기술적 성격을 부여한다. 軍縮問題의 기술화 혹은 技術的 軍縮이라고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 軍縮 혹은 軍備管理交渉의 당사자는 상호간에 軍備의 保持를 인정하고 즉 그의 軍備의 최종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군사적 균형과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관리되어야 할 軍備의 量과 質, 軍備의 規制와 削減의 方法 또는 그 비율에 대하여 交渉을 하고 妥協을 求한다. 환언하면 管理를 받지 않는 軍備의 量과 質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軍備體系가 비대화하고 복잡하게 되면 될수록 그 기술적 성격은 강화된다. 核軍備管理交渉에 있어서 그것은 頂點에 이르게 된다. 그 전형적인 事例는 SALT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ALT의 기간중에 체결된 「미·소 우발전쟁방지 협정」은 不意의 核爆發事故의 상대국에게의 통보, 국경외로의 미사일發射計劃의 사전통고 등의 정보교환에 관한 것으로서 아무런 核軍備의 削減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불의의 核事故가 核戰爭을 일으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협정한데 불과하다. 핫라인 협정도 마찬가지다. 또한 SALT(1)의 「공격용 미사일 잠정 협정」은 전략적 공격용 핵무기의 발사대의 수와 형태를 제한하지만 이와같은 제한의 量과 質은 미·소의 核戰力の 均衡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된다. 부언하면 이 협정에 의하여 양국이 보유할 수 있는 발사대의 총수의 上限은 협정 시에 양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사일의 수를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多彈頭化(MIRV)에 制限을 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核軍備競争의 합법화에 기여한 셈이었다. 軍縮이 軍備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軍備의 폭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제는 軍備의 撤廢는 불가능하며 평화의 수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軍縮問題의 기술화 원인은 군축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軍縮이 軍備管理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환언하면 軍備管理는 본질적으로 軍縮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軍縮의 이름으로 논의되어진데 問題가 있다. 軍縮과 軍備管理와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혼동은 우연한 것도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軍縮問題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國際社會에 있어서 軍縮이提起되고 그 관념이 형성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헤이그平和會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國際聯盟과 그 시대의 軍縮會議를 거쳐서 國際聯合憲章과 國際聯合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軍縮交涉에 의하여 軍縮은 점차로 國際社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간주되게 되었다. 軍縮問題의 법적위치는 연맹시립 以前의 시기와 그 以後에 있어서는 質的으로 다르고, 또한 연맹시대와 핵무기가 출현한 국제연합시대에 있어서도 군축을 둘러싼 조건들은 같지 않다. 이러한 相違는 국가가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본 부차별전쟁관이 지배하였던 제1차세계대전이전의 근대국제법으로부터 전쟁위법화를 지향하는 그 이후의 현대국제법으로의 전개의 시기구분에 조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7-18세기에 성립된 근대국제법의 기반은 1648년 Westphalia 講和에 의하여 탄생한 유럽국가계이고 그것은 主權獨立의 국제적인 안전을 유지하였다. 이와같은 구조의 근대국제법은 주권국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 수단으로서의 군비 특히 군대의 유지(군비의 자유)는 주권국가에게는 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되고, 당연히 그의 국내사항이라고 생각되었다. 단지 이것은 국내적으로 군비를 국가의 군대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로부터 군사력을 제거해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유지라고 일컬어지고 여러국가 특히 당시의 유럽 대국과 기타의 대국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비의 증강에 노력하였다. 그들 근대국가들은 그 군비를 사용하여 전쟁에 의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식민지획득에 분주하였다.

군비증강과 전쟁은 당시의 자본주의발전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군비의 자유를 주권의 속성으로 인정한 근대국제법체계에는 군축은 포함될 수가 없었다. 국제법학설상에서도 제1차세계대전까지는 군축에 관한 주장은 거의 없었다. Vattel의 국제법(1758)에도 전쟁에 관한 서술은 있지만, 군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더욱이 근대계몽기의 학자들중에는 군비의 철폐를 주창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그러한 영구평화계획은 대단한 철학적 사고의 산물이긴 하였지만 당시의 국제관계의 현실에 밀착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제법체계와의 관계를 거기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당시의 여러 국가들의 실천적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군비제한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들은 세력균형에 근거하는 2개 국가²⁾의 역학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의 국제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패전국이나 식민지화된 지역이 평화조약 등으로 군비가 제한되어지거나 혹은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당시의 군축국제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패자나 약자를 승자나 강자의 이익의 대상으로 하여 약체화시켜서 사실상 주권국가의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약육강식을 정당화한 근대국제법의 특징을 반영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군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예로서 군함의 건조제도 및 그 장비의 상호전달을 결정한 1787년8월30일의 영·불·간 조약, 오대호에 있어서의 군함수, 그 규모와 장비의 제한을 정한 1871년 미·영간 Rush-Bagot 조약. 이외에도 1831년 Bolivia·Peru간 조약, 1930년 Argentine·Chile간의 조약 등.

군축문제의 제기는 제1차세계대전이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26개국(대부분은 유럽국가)이 회동한 1899년 第一回 헤이그평화회의에 있어서 처음으로 군축이 논의되었다. 동회의의 제일위원회(군비제한)에 있어서 군비증강에 대한 制限問題가 논의되고 특히 병력수 혹은 군사예산(혹은 양자)의 규제가 조약상 필요한 지가 문제로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러시아 제안³⁾의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군사소위원회는 결국 ‘① 균형이외의 요소를 동시에 규제하지 않고 5년간만이라도 병력 수를 고정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② 각국에 의하여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방위의 요소를 국제조약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만장일치(단지 러시아대표를 제외)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⁴⁾. 해군의 규제에 관한 소위원회의 보고서 이것과 같았다. 그 결과 제일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의에서 위원회는 현재계를 뒤엎고 있는 군사부담의 제한이 인류의 물질적 및 정신적 복지의 증대에 꼭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⁵⁾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회의는 결국 모든 군비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국제분쟁의 평화적처리에 관한 조약과 陸戰에 관하여 3개의 선언이 採擇되었다.

1907년 第二回 헤이그평화회의에는 당시 모든 대국을 포함한 44개국(단, 중국은 제외)이 참가하였지만, 여기에서도 군비제한문제는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의 군사비가 1899년 이래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영국의 제안에 근거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을 뿐이다.

요컨대 2회의 헤이그평화회의에 있어서 군비제한문제는 제기되었을 뿐 거의 진전이 없었고 그 조약화는 논의로 전쟁의 인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절차에 대해서 조약이 성립되는데 그쳤다.

무차별전쟁관과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유지의 비극적 귀결이며 그 붕괴를 나타낸 제1차세계 대전후에 처음으로 군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면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이 세계대전을 처리한 Versailles 평화조약 기타의 평화조약의 第一部를 구성하는 국제연맹규약은 군비축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⁶⁾.

- 第八條, 1, 연맹국은 평화유지를 국가의 안전 및 국제의무를 협동행동으로 하는 강제에 지장이 없는 최저한도까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한다.
- 2, 연맹이사회는 각국 정부의 심의 및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리적 지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군비축소에 관하여 案을 작성하도록 한다.
- 3, 해당안은 적어도 10년마다 재심의를 부의하여야 하며 또한 개정할 수 있다.
- 4, 각국정부는 전기의 안을 채용하였을 때는 연맹이사회의 동의를 있으면 해당안소정의 군비제한을 초과할 수가 있다.
- 5, 연맹국은 그 군비의 규모, 육해공군의 기획 및 군사상의 목적에 공용될 수 있는 공업의 상황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격의없는 보도를 교환할 것을 약속한다.

3) 러시아제안은 다음의 3개항에 걸친 규제를 행하려고 한 것이었다.

- ① 본토에 유지되는 평시의 현행병력수의 증가금지를 5년간 규정하는 국제협정의 체결, ② 가능하다면 이 협정중에 모든 국가의 군대의 평시편성(식민지군은 제외)의 수의 고정화, ③ 같은 5년간 현행의 군사예산의 유지등이다.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 la paix, 2e partie, Première Commission, pp. 21-22).

4) 同書, pp. 31-32.

5) 同書, p. 34.

6) 연맹시대에 있어서의 군축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三枝茂智 「國際軍備縮小問題」, pp. 378~1975년 復刊原書房. 1933.

第九條, 第一條 및 第八條의 규정의 실행 및 陸海空軍問題全般에 관해서는 聯盟理事會에 의견을 제시하는 常設委員會를 설치한다.

이들 규정은 직접적으로는 第一次 世界大戰에서 패배한 독일에 대하여 versailles平和條約 第五部に 의하여 과하여진 一方的軍縮義務와 관련하여 그것을 戰敗國에 한하지 않고 모든 연맹국들에게 義務지우는 一般的軍縮으로 확대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軍縮規定은 연맹규약이 無差別戰爭觀에 대신한 戰爭違法化에로의 第一歩를 내딛고서 그것에 동반하여 勢力均衡方式에 대신한 集團的安全保障體制를 평화유지의 방법으로 채용하게 될 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전쟁은 드디어 허락될 수 없고 만약 違法한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制裁措置가 취해지는 體制를 배경으로, 처음으로 군축의 가능성이 인정되게 된 것이다.

1922년 第三總會第三委員會는 Lord Robert Cecil의 보고에 근거하여 유명한 決議XIV를 체결하였다. 이 決議는 軍縮問題의 基本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여 연맹의 추후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것에 의하면 「2, 世界の 現狀下에서 대다수의 정부는 自國의 安全을 위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지않는 한 중대한 軍備삭감의 책임을 지는 것은 不可能하다. 3, 이와같은 보장은 制約國에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원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國家가 참가할 수 있는 防衛的協定에 의하여 또한 그들 국가들중의 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被攻擊國을 援助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지구상의 같은 지역에 있는 國家들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조건으로 미리 정해진 계획에 좇아서 제공될 수가 있다.」

이와같이 軍縮은 聯盟國의 안전과 관련되어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이 견해는 후에 제네바議定書를 作成할 때 仲裁裁判, 安全保障, 軍縮이 三位一體가 되어 전개되었다. 軍縮과 安全保障의 결부는 聯盟規約 중 (8條1項)에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중에 軍備制限의 전제로서 諸國에 요구되었다. 그러나 軍備의 존재가 안전을 위협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軍縮, 安全保障, 仲裁裁判의 三者의 關係는 각각의 실현을 위하여 다른것을 필요로 하는 소위 循環論法에 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軍縮은 安全保障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安全保障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연맹하에서 1923년 相互援助條約案, 1924년 제네바議定書는 侵略戰爭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措置의 조직화 속에서 軍縮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聯盟規約의 중대한 결함(制裁問題)을 보충함으로써 연맹의 역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文書로 되었다.⁷⁾ 그 위에 이 議定書는 N. Baker는 제네바議定書가 聯盟規約8條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맹의 여러가지 기관에 의하여 4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작업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論理的 結論이라고 하였다.⁸⁾ 또한 이 議定書는 軍縮會議의 소집을 1925년 6월15일에 하도록 결정하였다. (17條) 그리하여 議定書는 軍縮計劃의 채택에 수반하여 발효하고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효되게 되어 있었다. (21條)⁹⁾ 이와 같이 議定書의 存在 자체

7) Genève議定書 3~6條는 平和的 節次를 보충하고 (특히 4條는 聯盟規約 15條를 補充). 2條는 戰爭에 호소하는 것을 除去하고, 7~9條는 事實上的 敵對行爲를 避하는 實際의 方法을 表明하고, 10條는 侵略者 決定에 관한 困難을 除去하고, 11條以下는 侵略者에 대한 制裁를 規定하여 聯盟規約 16條를 보충하는 것이었다.

8) Noel Baker, P, J, The Geneva Protocol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925), p. 7.

9) 議定書의 軍縮關聯規定(17, 21條 議定書 附屬 決議)의 意義와 問題點에 관하여 同書, pp. 182~190.

가 軍縮의 成立如否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軍縮이 重視되고 있었는가 이해할 수 있다. 議定書가 總會에서 채택되자 곧바로 14개국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제네바議定書의 不成立은 聯盟의 歷史 보다 넓게는 第1次世界大戰後의 國際政治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을 나타내었다. 이후 聯盟의 노력은 영국의 영향 하에서 지리적으로 한정된 部分的 解決을 구하는 地域的 特別協定の 방향을 향하게 되어 聯盟을 中心으로 하는 集團的 安全保障에의 노력은 사실상 포기된 셈이다. 그 최초의 예가 소위 Rhine의 현상유지를 보장하는 1925년의 Locarno협정이었다. 이것은 연맹외곽에서 결정된 것이었지만 Locarno體制의 성립에 수반된 독일의 연맹에의 加入(1926년)이 軍縮問題의 작업에 새로운 요인을 도입하게 하였다.

聯盟의 테두리 밖에서 1928년 不戰條約이 서명되어 安全保障의 確保를 향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海軍軍縮에 관해서 영·불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1930년 London에 있어서 海軍國問의 交渉의 결과 海軍軍備의 制限 및 削減에 관한 條約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日本問에 체결되었다.¹⁰⁾ 이 條約은 Washington條約(1922년 批准되지 않음)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軍艦의 종류별에 총톤수의 제한을 과하였다. London條約의 成立은 軍縮準備委員會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條約案中の 海軍의 規制에 반영되게 되었다. [軍備의 削減 및 制限을 위한 會議], 소위 軍縮會議은 1932년 2월2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世界史上 여태까지 개최된 일이 없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1931년3월17일)라고까지 논평되었던 이 軍縮會議에는 聯盟加盟國政府 이외에 非聯盟國인 미국, 소련을 비롯하여 Afghanistan, Brazil, Egypt, Mexico, Turkey 등 59개국 정부가 참가하였다.¹¹⁾ 軍縮會議은 準備委員會의 一般的 軍縮條約案을 그 작업의 기초로 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지만 그 외에도 소련의 軍備削減條約案을 비롯하여 안전보장에 관한 프랑스提案, 兵役義務廢止 등에 관한 독일提案 攻擊武器制限에 관한 美國提案 등 다수의 제안이 여러 대표로부터 제출되었다. 會議은 6개월의 토의를 거쳤음에도 目的은 달성되지 않았고 본질문제에 관한 종래의 의견의 상위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軍縮會議은 그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결국 一般的 軍縮(量的 質的 削減)의 기도를 포기하고 주로 武器製造의 감시와 규제에 노력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1934년 6월11일 회의는 無期延期될 수 밖에 없었다.¹²⁾

聯盟規約의 성립으로부터 10數年에 걸쳐서 면면히 계속되어 온 軍縮努力은 결국 軍縮會議의 실패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회의의 실패는 軍縮의 준비부족과 軍縮案에 포함한 諸措置의 不適切함에 근거하였다기 보다는 1930년 유럽을 중심으로 한 政治危機(Versailles體制붕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었다.¹³⁾ 그리하여 聯盟의 여러가지 실패중 軍縮會議의 실패야말로 가장 重大하고 가장 반향이 큰 것이었다고 일컬어진다.¹⁴⁾

10) 이 條約은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만 비준하여 그들 국가간에 效力이 發生하였다.

11) Mexico와 Turkey는 軍縮會議에의 참가를 계기로 聯盟에 加盟하였다. 그후 軍縮會議에의 참가국은 合計61개국 이 되었고, 日本은 1931년 9월18일 만주사건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聯盟國으로서 예정대로 軍縮會議에 참가하였다.

12) 軍縮會議은 이것으로 消滅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1936년까지 斷續의이긴 하지만 部分的 혹은 限定的 協定을 체결하려는 努力이 기도되었다. 그러나 政治危機의 增大로부터 會議의 討議에는 유럽외의 國家들은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1937년에는 會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13) Wilson, Hugh R., Disarmament and the cold War in the Thirties, (1963), pp. 38, 51-52, 53.

14) Rappard, William E., "Qu'est-ce que la Société des Nations?" in La Crise Mondiale, Collection d'études publi à l'occasion du dixième anniversaire de

들이켜보건데 戰爭違法化를 도입한 聯盟時代의 軍縮討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다. 聯盟規約上 軍備의 自由는 정당성을 잃고 그 규제가 聯盟의 法的構造內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것은 第1次世界大戰前과 質的으로 틀리는 점이다. 그러나 軍縮討議의 배경에는 항상 安全保障과 관련되어 軍縮, 安全保障, 仲裁裁判의 三位一體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軍縮實施의 전제로서 安全保障의 確保를 求하는 사고방식(특히 프랑스 發想)이 유력하였다. 그 위에 거기에는 聯盟의 集團安全保障보다도 각국 獨자의 個別的 安全保障이 주로 염두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聯盟規約8條에 安全保障을 위한 軍縮의 制限 및 削減이 목표로 되어 있었고, 全面完全軍縮은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았다. 소련의 全面完全軍縮案은 聯盟體制와 모순이 된다고 까지 평가되었다.¹⁵⁾

軍縮措置의 내용에 관해서는 軍縮準備委員會와 영국의 軍縮條約案에 제시된 바와 같이 陸·海·空 三軍의 軍備가 대상이 되었다. 海軍軍縮의 일정한 措置가 聯盟태두리 밖에서도 條約化되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陸軍軍縮은 특히 유럽 大陸諸國으로서는 수락하기 곤란하였다. 軍縮條約案에서는 항공기의 발달에 수반하여 空軍軍縮 혹은 공습의 규제에 가장 많은 주의가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무기에 대해서는 重砲나 重戰車와 같은 在來武器의 규제도 시도되었지만 化學 및 細菌武器 등 大量破壞의 성격을 가진 新武器의 禁止가 軍縮討議의 주된 對象이 되었다. 또한 軍事費나 武器去來의 문제를 취급하였지만 예를들면 외국(植民地를 포함)에 있는 軍事基地撤去와 같은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여년에 걸친 聯盟을 중심으로 한 軍縮討議는 英·佛·獨 등 유럽의 강대국의 군비를 둘러싼 견해대립의 조정이 추가되어 여기에서도 西歐中心構造가 지배하여 미국을 제외한 西歐外(특히 Asia, Africa)의 世界的 軍備나 軍縮에는 전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軍縮會議準備委員會와 軍縮會議에는 當時의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가 참가하였지만 많은 Asia, Africa 국가들은 여전히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또한 적극적인 제안이나 발언을 한 것은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면 주로 西歐列強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聯盟時代의 軍縮討議의 展開와 그의 좌절은 그 결과이기도 한 第2次世界大戰 속에서 생성되어진 전후의 新國際機構의 構想에도 반성의 재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第2次世界大戰後의 軍縮努力은 國際聯合體制라는 基本的 태두리 속에서 새로이 시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第2次世界大戰末의 原子爆彈의 출현은 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총래의 安全保障觀에 본질적 영향을 미쳐서 군비나 군축문제에서도 核武器가 中心的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행해진 軍備에 관한 法的規制의 기도는 국제연합현장의 규정을 넘어서서 東西兩陣營으로 분열되었던 국제정치의 전개를 반영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核軍備競爭과 그것을 規制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었다. 더욱이 1960년이래 비식민지화에 의한 다수의 Asia Africa諸國의 국제사회에로의 등장에 수반하여 軍縮은 동서관계에서만 이 아니고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문제로서 논의되게 되었다.

國際聯合憲章中 軍縮에 직접 관련되는 규정은 극소수(11條1項, 26條, 47條)이고 더욱이 그 내용은 대단히 간결하다. 그러나 이것은 憲章의 起草過程에 있어서 軍縮問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다루어도 괜찮다는 意味는 아니다. 오히려 第2次世界大戰 當初부터 특히 聯合國側은 전후의 세계를 전망하여 평화유지를 위한 國際機構를 고안하는 속에 軍縮을 安全

l'Institut de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par ses professeurs, Deuxième édition(1939), p. 50

15) Tolédano, André D., Ce qu'il faut savoir sur le désarmement, (1932), p. 120.

保障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1941년 1월 Roosevelt 미국대통령은 의회에의 年頭敎書에서 장래의 세계의 기초가 될 「네 개의 自由」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恐怖로부터의 自由」는 「어느 國家든 이웃國家에 대해서도, 世界 속의 어느 곳에 대해서도 物理的侵略行爲를 犯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또한 그 정도의 철저한 방법으로 세계적 규모의 軍備削減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Roosevelt 대통령과 Churchill 영국수상이 공동발표한 大西양憲章도 「兩國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신적 혹은 실질적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武力行使의 포기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確信을 표명한다. 그리하여 國境밖의 침략으로 위협하고 있거나 혹은 위협할 수 있는 諸國이 陸·海·空軍을 保持하고 있는 한 장래에 平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兩國은 一般的安全保障의 보다 넓은 恒久的體制가 확립될 때까지 이 국가들의 軍縮이 不可缺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양국은 平和로운 國民들을 震盪시키는 軍縮의 중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援조하고, 장려한다.」(8項)¹⁷⁾라고 선언하였다. 國際聯合憲章起草過程에 있어서는 미국 보다 오히려 소련쪽이 軍縮에의 언급에는 더 열심이었다. Dumbarton Oaks 회의(1944년 8~9월 미국·영국·소련, 중국)에서 미·영·소·중의 4개국은 平和와 안전의 유지기능이 安全保障理事會에 위임되고 강대국이 세계의 安全保障에 대하여 지게되는 예외적 책임을 이유로 安全保障理事會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安全保障의 통일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一般國際機構의 設立에 관한 Dumbarton Oaks 提案의 하나의 章(8章)에 安全保障體制에 관한 모든 規定(平和的解決節次에서 軍事的強制措置에 이르기까지)을 두었다. 安全保障의 소위 정점으로서의 軍縮의 사고방식은 이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듯하였으나 분명하지 않는 이유로 軍備規制에 관한 규정은 第8장이 아니고 安全保障理事會에 관한 第6章에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軍備問題에 관한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집중되었다.¹⁸⁾ 특히 총회의 平和的解決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은 軍備規制와 軍縮이 「平和와 안전의 維持」에 포함된다고 하여 특별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軍備規制(regulation of armament)의 용어를 사용하고, 軍縮(disarmament)의 용어를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소련의 제안으로 쌍방의 표현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총회는 「협력의 一般原則을 軍縮 및 軍備規制를 규율하는 原則을 포함하여 審議하는」(Dumbarton Oaks 提案 Par. V-B-1) 權利를 부여받았다. 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해서는 미국 시안의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의 人的」 및 經濟的資源을 軍備를 위해서 전용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國際的 平和 및 安全의 確立과 維持를 促進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는 軍事參謀委員會의 援조를 얻어서 「機構의 加盟國에게 제출되는 軍備規制의 방법」(Dumbarton Oaks 提案 Par. VI-B-5)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權利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Dumbarton Oaks 提案에는 軍備規制體系에 근거하는 원칙들은 규정되지 않고 장래의 결정에 위임되고, 또

16) Public Papers and Addresses of Franklin D. Roosevelt: War and Aid to Democracies, P. 672

17)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Roosevelt and British Prime Minister Churchill, August 14, 194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1, P. 367

18) Dumbarton Oaks 회의에 있어서 共同定式化그들은 軍縮問題에 관한 총회의 役割에 대한 미·영·소의 견해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條文案을 起草하였다. 「총회는 平和 및 安全의 유지에 대한 國際協力에 관한 一般原則을 紛爭의 平和的解決 및 軍備의 規制를 規律하는 原則과 加盟國 또는 理事會에 의하여 총회에 제외된 平和 및 安全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또한 이와같은 원칙 및 문제에 관하여 권고하는 權利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한 미국의 시안에 있었던 樞軸國의 군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50개 연합국의 참가 하에서 전후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세계기구의 기본문서인 國際聯合憲章을 채택하였던 1945년 4~6월의 San Francisco會議에서는 軍備規制의 문제는 거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장래의 軍備規制에 관한 협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를 나타낸 Dumbarton Oaks提案의 國聯規定은 어떤 특별한 토의도 거치지 않고 채택되었다.¹⁹⁾

하나는 총회의 광범한 政治的 權限의 一部로서 憲章11條에, 다른 하나는 安全保障의 章의 26條(이것과의 관련으로서 軍事參謀委員會에 관한 47條1項)에 포함되었다. 國際聯合憲章의 軍縮에 관한 規定은 國際聯盟規約에 비하여 대단히 간단한 것이었다. 거기에서는 軍備規制를 위한 機構와 節次는 一應 정해졌지만, 그 방법이 의거해야만 하는 원칙에 관해서는 완전히 앞으로의 검토에 위임한 셈이다. 또한 그 방법에 근거하는 軍備規制는 諸國間의 一般條約에 의하여 實現되어야 한다는 것을 憲章規定이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國際聯合憲章은 原爆이전에 起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무기의 등장이 軍縮問題에 대하여 끼치게 되는 거대한 영향은 憲章起草자들에게는 의식되고 있지 않았다. 당연히 현상도 원자무기의 존재를 예측하고 있지 않았다. 國際聯合憲章에 있어서의 軍縮問題의 기본적 특징은 武力行使의 禁止와 紛爭의 平和的 解決(憲章2條 3,4項)만으로는 國家安全保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安全保障을 궁극적으로는 뒷받침하는 軍縮 내지 軍備規制의 審議와 그 방법의 확립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는 점이다. 국제연맹에서는 安全保障, 仲裁裁判(平和的 解決), 軍縮의 3가지 基本根據에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체제를 지향하였지만, 國際聯合에서는 安全保障을 주목표로 하여 規定上 軍縮을 第2義的地位로 취급하였다. 憲章은 총회에 「軍縮 및 軍備規制를 規律하는 원칙」의 심의를 인정하고 또한 安全保障理事會만에 軍備規制의 방법을 확립하는 계획작성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가맹국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환언하면 연맹국의 경우(規約8條1項)와 달리 國際聯合加入國에게는 憲章上 직접 어떠한 軍縮義務도 부과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憲章은 그 목표를 軍縮보다도 安全保障에 두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憲章의 軍縮規定을 발생시킨 배경에는 연맹시대의 軍縮努力의 좌절, 第2次世界大戰中の 樞軸國에 대항하는 軍備의 必要, 戰後世界的 安全保障確保 때문에 一定한 軍備가 불가결하다고 보는 발상이 존재하였다.

要컨대 國際聯合의 活動開始後 憲章의 軍縮規定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한 군축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戰後의 軍縮交渉은 憲章起草者가 예기치 못했던 方向으로 전개되어 憲章規定을 초월하게 되었다. 그 契機는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이었다.

1945년 8월의 日本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투하와 그 효과 및 피해상황이 세계에 전파됨에 따라서 인류의 장래에 대한 원자폭탄의 위협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이 狀況認識 속에서 미국·영국·캐나다는 1945년 11월15일 原子力國際管理宣言을 발표하고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民間레벨에서도 軍縮에 一定한 位置를 주는 世界政府의 構想까지 論하게 되었다.

國際聯合은 그 活動의 最初부터 原子力武器를 비롯한 主要武器의 國家軍備로부터의 廢棄 즉

19) 軍備規制 내지 軍縮 問題는 國際聯合憲章의 安全保障體制의 최종단계에 관련된다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San Francisco회의에 있어서는 거의 論議되지 않았다. 더욱이 회의에 있어서 Uruguay代表는 武器의 私的製造를 禁止하는 提案을 하였다. (Docum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1945), Vol. 4. Dumbarton Oaks proposals comments and proposed amendments French texts and others, pp. 24, 39).

진정한 軍縮의 問題를 취급하였다. 국제연합총회 제1회기는 1946년 1월24일 國際聯合原子力委員會 設立에 관한 決議 I 를 채택하였다. 原子力委員會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原子武器의 軍縮案을 제출하였다. 먼저 1946년 6월14일 미국대표 Bernard Baruch가 原子力國際管理案을 제시하였다.²⁰⁾ 이 案은 原子力の 國際管理를 위하여 超國家的權限을 갖는 國際原子力開發機構(IADA)의 창설을 제안하고, 이 機構가 原子力の 原料 施設을 獨점적으로 所有하고 運營하여 原子力武器를 獨점적으로 연구할 것, 또한 原子力國際管理는 단계적으로 進行하여 管理規定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規定된다면 原子爆彈獨占의 製造禁止 및 그 廢棄를 行할 것. 특히 原子力에 관한 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拒否權을 認定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였다. Baruch案은 같은 해 7월에 3개의 覺書²¹⁾에 의해 보완되어서 美國原子力關係管理案의 내용이 명백하게 되었다. Baruch案의 직후 1946년 6월19일 소련대표는 原子力委員會에 原子力武器禁止條約을 제안하였다.

國際聯合原子力委員會는 미·소 양제안의 타협을 시도하였지만 常任會員國(미·영·소·불·중·캐나다) 間에 國際管理에 關於하여 同意의 기초를 이룩하지 못하고 原子力國際管理에 관한 條約案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작업을 停止할 수 밖에 없었다. 1949년 9월23일 소련의 최초의 원자폭탄실험에 의한 미국의 핵독점의 종언, 中國혁명의 성공이라는 국제정세의 急變을 맞아서 原子力國際管理의 최초의 機會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 機能을 停止하고 있던 原子力委員會는 1952년 1월 해산되었다.

原子武器에 限하지 않고 軍備의 一般의 規制에 關於해서도 國際聯合의 實行은 憲章規定에 좇아서 처음부터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1946년 가을의 國際聯合總會 第一會期(第二部, New York)에 먼저 소련의 발의로서 軍備 및 軍隊의 一般의 規制 및 制限의 문제 가 검토되고 같은 해 12월14일 소위 軍縮大憲章으로 불리우는 總會決議41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決議에 의하면 總會는 憲章11條를 이행하여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좇아서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強化하기 위하여, 武器와 軍隊의 조속한 一般의 規制와 削減의 必要를 認定하고 따라서 安全保障理事會가 이러한 規制와 思想을 規定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또한 그것들이 참가국의 일부국가들만에 의해서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들이 전반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실제적 조치들을 그 우선순위에 좇아서 책정하도록 조속히 審議하는 것을 勸告한다. 安全保障理事會가 策정한 계획은 事務總長이 國際聯合加盟國에게 제출하여 總會의 特別會期에서 審議된다. 총회에서 승인된 條約은 憲章26條에 좇아서 批准을 받기 위하여 署名國에 送付된다.

安全保障理事會는 이 決議를 受諾하고 1947년 2월 通常軍備委員會를 設置하였다. 이 委員會는 理事國으로 構成되어 3개월이내에 ①武器와 軍隊의 一般의 規制와 削減 ②軍備의 一般의 規制와 削減에 關於하여 實際的이고도 有效한 保障措置를 위한 제안을 작성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제출하도록 指示하였다. 通常軍備委員會는 1948년 2월 2개의 決議와 作業報告를 採擇하였다. 第一決議는 原子武器, 기타의 大量破壞武器를 제외한 모든 軍備와 軍隊를 그 管轄下에 둔다. 第二決議는 軍備와 軍隊의 規制와 削減의 方法確立을 위한 一般原則을 열거하였다.

通常軍備委員會는 1950년 4월을 최후로 소집되지 않았고 (「國民黨」이 中國대표로서 委員會에 참석하는 限 소련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宣言함.), 1952년 2월 해산하였다. 通常軍

20) Official Records of Atomic Energy Commission, First Year No.1, 1st Meeting p.7. 戰後의 軍縮交渉에 關於한 詳細한 것은 前田壽 「軍縮交渉史」東京大學出版會, 1968.

21) Official Records of Atomic Energy Commission, First Year, Special Supplement, Annex 4, pp. 92-102, 106-111.

備委員會의 실패는 原子力委員會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당시의 냉전에 의한 것이었다. 原子力委員會 및 通常軍備委員會의 設立과 그 活動은 憲章의 軍縮關聯規定의 實施나 展開로 이해되다가 냉전으로 봉기되었지만 동시에 몇가지 敎訓을 남겼다. 즉 軍縮의 方式이라는 기술적인 조치의 제안을 둘러싼 相違의 배경에는 東西間의 不信, 冷戰이라는 현실이 존재하여 기술적인 상위의 해소로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었다. 당시의 국제연합 내외에서의 세력관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더욱이 원자폭탄 독점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효과를 감소하는 原爆禁止提案에는 반대하고 軍縮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通常軍縮에 限定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련은 核軍縮이 최대목표이고 이것은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외에 소련의 防衛上 有利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국제연합 발족 당초의 軍縮提案은 미국과 소련 내지 東西關係間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委員會의 좌절 후 1952년초 그것들과 같은 構成國들로 구성된 軍縮委員會가 安全保障理事會下에 設立되었다²²⁾. (總會決議 502(VI)) 또한 軍縮委員會의 構成도 문제가 되어 소련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加盟國이 小委員會의 5개국중 4개국을 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軍縮委員會에 14개국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총회결의 1150(XII)에도 소련의 반대이유(모든 가맹국들로 구성되는 常設軍縮委員會設置提案)에 회답이 없으므로 同委員會 및 小委員會에 결석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1957~8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軍縮委員會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軍縮交渉의 停止와 小委員會의 해산(1958년)에 직면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은 1957~8년차보고 서문에서 총회의제에 「軍縮問題」를 등록하도록 제안하고 제13차 총회의결의 1252A. D(XIII)는 軍縮에 관한 국제연합의 책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1959년 軍縮委員會는 모든 加盟國으로 構成된다는 것을 決定하였다. 1950년대의 국제연합에서의 軍縮討議는 한국동란 후 軍縮委員會에 있어서도 계속되었지만 同委員會에서도 구성은 西方側 中心이고 총회결의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어서 核武器禁止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소련 제안이 고립되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核實驗禁止 등 部分的 措置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제안에 있어서도 實質의 進展이 전혀 없었다.

1959년말 국제연합 내외에서 軍縮交渉 再開의 기운이 높아졌다. 제14차 국제연합총회는 全面的 完全軍縮이야말로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基本目標라고 선언하고 同會期 開會에 앞선 미·영·불·소 4개국 外相會議에 있어서 軍縮에 관한 새로운 10개국 軍縮委員會를 국제연합의 外側에(국제연합과의 관계를 갖고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展開는 冷戰에서 平和 共存에로의 國際政治의 變化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과 소련은 제16차 국제연합총회에서 軍縮에 관한 장래의 교섭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원칙을 포함한 宣言 소위 미·소 軍縮共同聲明(1961년 9월20일)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東西兩大國이 처음으로 軍縮問題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중요한 성과이며, 軍縮交渉의 目標와 全面的인 完全軍縮計劃에 관해서 一致를 보게 된 주목할 만한 文書였다. 제16차총회에서는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교섭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合意에 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決議1660(XIV) 이 要請에 좇았던 미국과 소련의 제안에 근거한 決議1722(XVI)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決議1660은 미국과 소련이외의 國家 특히 제3세계의 신흥국가인 인도가 제안한 軍縮에

22) 1950년의 총회결의 496(V)에 의하여 설치된 12개국 위원회(11개 이사국과 캐나다로서 構成)는 전기양위원회 활동을 조정하는 절차를 연구하여, 신화대군축위원회에 그의 기능을 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6총회에서는 12개국 보고서와 미·영·불의 요구로 의제에 오르게 되었다. 「모든 군대 및 모든 군비의 규제, 제한 및 균형이 잡혀진 식감」 문제가 검토되었다.

관한 최초의 것이었다. 決議1722는 미·소 공동성명을 환영함과 동시에 全面的인 完全軍縮에 관한 交渉이 그 原則들에 근거하여 행할 것을 권고하고 18개국 軍縮委員會(ENDC)의 構成國家에 관하여 合意에 달한 決定을 하고 위원회의 교섭재개를 권고하였다.

兩條約案은 ENDC, 그위에 국제연합총회의 검토에 회부되었다. 제17차총회는 33개국의 제안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決議1767(XVII)에 의하여 全面的인 完全軍縮協定을 가능한 용이하게 締結할 것을 요청하고 ENDC에 대해서는 교섭재개와 「긴장을 완화하고, 전면완전군축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여러가지 부속조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매년 ENDC와 국제연합총회에서 全面完全軍縮問題의 검토는 반복되었지만 구체적인 進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全面的인 完全軍縮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약간의 部分的인 措置만이 條約化되게 되었다.

部分的인 措置 가운데 일찍부터 논의된 것은 核實驗禁止問題였다. 이것은 1955년부터 軍縮委員會(London小委員會)에서 특히 국제연합총회에서 검토되었다. 核實驗禁止 특히 포괄적 핵실험금지문제는 核武器擴散禁止條約(N. P. T.)의 交渉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었다. 1964년 中國의 최초의 核實驗을 계기로 核擴散禁止條約具體化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어 1965년 8월에 미국은 그 條約案을 ENDC에 제출하고, 이것을 NATO多核戰力(MNF)으로 가는 전초라고 비난한 소련도 그해 9월 스스로의 條約案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였다. 1967년 8월 미국과 소련은 동일한 내용의 條約案을 ENDC에 제출하고 그 후 개정안을 거쳐서 다음해 국제연합총회는 「核武器의 擴散禁止에 관한 條約」을 採擇하였다(決議 2372(XII)부속). 이것은 署名과 批准을 위해서 開放되어 1970년 3월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核擴散禁止條約의 核心은 核武器保有國이 「核武器 기타核爆發裝置 또는 그 管理를 어떠한 者에게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양하지 않을 것」(一條) 및 이것과 表裏關係로서 非核國家는 그것들을 「어떠한 者로부터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受領하지 아니할 것」(二條)이다. 이것이 소위 核武器保有國의 水平擴散防止를 의미한다. 核保有國의 核軍縮이라는 垂直인 不擴散을 목표로 한 前文, 6個條로 된 이 條約은 본질적으로 核國家 對非核國家의 차별적 체제를 창출해 내었다.

이 條約은 締約國인 Latin America 諸國이 核武器의 開發·生産·保有 등을 행하지 않을 義務(소위 「非核化」實現의 義務), 이 義務履行을 위한 機構의 設置, 國際原子力機關(IAEA)와 交渉해야만 한다는 保障措置에 관한 協定 등의 의무를 인정할 것을 條件으로 核保有國에 대해서는 非核地帶의 地位를 충분히 존중하고 締約國에 대해서는 核武器의 사용 또는 그에 의한 위협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는 制度를 마련하였다. 이 制度는 核軍縮 특히 核武器의 削減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非核國家뿐만 아니라 核保有國家의 협력없이 작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核保有國에 의한 追加議定書Ⅱ의 서명 및 비준이 없이는 條約자체가 發效되지 않는다. (28條1項C)

이 條約은 미국과 소련의 核戰略의 초점으로부터 동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Latin America라는 넓은 人口密集地域의 非核化를 목표로 한 것은 意義가 크다. 더욱이 이 條約의 前文에서 「軍事的인 非核地帶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 있어서 全面的인 完全軍縮을 達成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條約을 모델로 하여 다른 地域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非核化와 보다 넓은 平和地帶化의 構想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외에 非核化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1971년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壞武器의 海底에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 소위 海底非核化條約이 작성되었다. 그

러나 이것은 연안국으로부터 12해리 바깥쪽의 海底地域에 大量破壞武器의 장치 등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原子力潛水艦의 행동 등 미국과 소련의 核戰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은 核擴散禁止體制 확립후 1969년 이래 교섭에 들어가서 미·소 양수되는 1972년 「탄도유도탄 미사일체제의 제한에 관한 조약」(ABM제한조약) 및 「전략공격무기의 제한에 관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잠정협정」에 서명하였다. 나아가서 1974년 11월 미국과 소련 양수되는 Vladivostok 공동성명에서 전략공격무기의 제한에 관한 新協定締結의 의도가 표명되어 3년이상에 걸친 第2次交渉의 결과 양국은 1979년 基本的合意를 이루었다. 戰略攻擊武器의 制限에 관한 條約(SALT II 조약). 이 條約에 대한 議定書 등 일련의 文書인 것이다.

二次에 걸친 SALT協定, 그 중에서도 SALT II 조약은 戰略核武器와 그 운반수단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주로 量的制限을 과하였다. 그러나 核武器開發의 속도는 이들 制限을 상회하여 SALT合意는 現實의인 核軍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核戰略上 重要視하게 된 戰術核武器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 상태로 놓아둔 셈이 되었다.

軍縮을 둘러싼 이와 같은 狀況展開에 대해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분적 조치가 아니고 참다운 軍縮 가운데서도 核軍縮을 촉진시킬 必要性,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共同議長體制를 취하는 제네바軍縮委員會會議나 미국과 소련 양국가간 교섭이 아닌 보다 넓은 국제적인 장소 즉 국제연합에서 군축문제를 토의할 필요성이 주장되게 되었다. 이 주장이 미·소 양국의 「핵우산」하의 諸國에서부터가 아니고 第三世界의 신흥독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同盟諸國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 주장은 軍縮努力을 다시 한 번 국제연합체제 속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요구이기도 하였다. 이 요구가 국제연합군축특별총회를 실현시켰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核軍備管理의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연합군축총회 실현에의 노력은 주로 비동맹국가들과 국제여론(軍縮關係의 非政府組織(NGO))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미 1961년 第一回非同盟諸國首腦會議의 宣言은 국제연합총회가 全面軍縮의 進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軍縮問題만을 토의하는 特別總會 내지 국제연합주최 하의 世界軍縮會議 개최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967년 第五回非同盟諸國首腦會議의 政治宣言은 世界軍縮會議開催까지 特別總會를 가능한 한 신속히 1978년까지는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제연합총회는 이미 1970년대를 「軍縮의 10년」으로 선언하고 있었으며 1976년 第31총회의 결의31-189B로서 非同盟諸國의 주장에 근거하여 軍縮總會의 개최를 결정하고 그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非同盟諸國이나 NGO의 이니셔티브하에서 활동을 계속하여 「宣言」과 「行動計劃」으로된 최종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것을 軍縮總會에 제출하였다.²³⁾

국제연합사상 최초의 軍縮特別總會(1978)에는 다수의 국가수뇌가 출석한 이 외에도 NGO 대표들에게도 그들의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거기에서 합의 채택된 최종문서(決議 S10/2), 구체적으로 軍縮措置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軍備競爭과 軍備管理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에 경종을 울리고 참다운 安全保障은 軍縮 속에만 있다고 선언하여 올바른 군축의 방향을 지시하였다.

최종문서는 유효한 국제관리 하의 전면적 완전군축을 최종목표로 하면서, 核戰爭의 위험의 제거와 核軍縮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연합헌장에 좇아서 국제연합이 군축분야에 있어서 中心的 役割과 주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최종문서에는 妥協의 결과

23)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isarmament, Vol. 1, A/S-10/1.

로서 지금까지의 여러가지의 부분조치에 관해서도 일정한 評價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軍縮機構의 改善에까지 관여하여 국제연합총회 第一委員會를 軍縮問題와 관련된 安全保障의 檢討에 한정된 것, 모든 加盟國으로 구성되는 軍縮委員會(DC)를 총회결의 502(VI)로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으로 설치한 것, 특히 제네바 軍縮委員會의 改組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軍縮總會의 開催와 最終文書의 採擇은 60년대 이래의 미·소 중심의 軍備管理를 목표로 한 軍縮交渉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 第三世界 특히 非同盟諸國과 다수 國家의 軍縮을 추구하는 여론의 노력의 결과이며 나아가서는 軍縮의 새로운 方向을 나타낸 第一步였다.

軍縮總會 이후 약간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軍縮委員會의 機構改革(40개국으로 구성)에 의하여 여태껏 그의 외각지대에 있었던 프랑스와 중국이 참가하여 처음으로 모든 核保有國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둘째는 최종문서에서 강조된 문제로서 非核國家의 安全保障問題가 그후 國際聯合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核戰略과 核國家 對 非核國家體制(NPT체제)에 불만을 가진 非同盟諸國을 中心으로 하는 非核國家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NPT第二回 再檢討會議(1980)에서는 核國家와 非核國家의 見解가 대립하여 어떠한 결의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외에 포괄적 핵실험금지, 화학무기군축, 방사성무기 금지문제 등 최종문서에 거론된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 다소의 전진을 보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과 SALT II 批准拒否이후의 국제정세 속에서는 軍縮이 아니라 오히려 軍擴傾向에 한층 더 박차가 가해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연합총회는 1980년을 「第二次軍縮의 10년」이라고 定하고(決議34-75) 또한 SSD I 최종문서를 받아서 1982년 第二回軍縮特別總會(SSD II)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SSD II 준비위원회는 1980년 설치되어 SSD II의 의제와 관련사항을 검토하였지만 구체적 군축조치에 관한 사실상의 준비작업은 제네바軍縮委員會(CD)와 국제연합軍縮委員會(D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제네바軍縮委員會는 그 의제로서 1. 核實驗禁止, 2. 核軍備競爭의 정지와 核軍縮, 3. 核武器의 使用 또는 使用의 위협에 대한 非核國家의 保障을 위한 效果的 國際結束, 4. 化學武器, 5. 新型大量破壞武器와 그 新體制(放射性武器), 6. 包括的 軍縮計劃을 선택하였다.

要컨데 國際聯合時代의 지금까지의 軍縮努力을 총괄해 보면 軍縮의 位置는 國際聯合憲章上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국제연합과 諸國家間의 교섭에 있어서의 軍縮問題의 展開는 核武器의 出現과 급격한 核軍擴競爭 속에서 국제연맹시대 이상의 긴박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경부터 구체적 제안이나 조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전면적 완전군축제안으로부터 부분적 조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의 軍縮은 미국과 소련의 核戰略 範圍內에서 즉 여전히 종래의 安全保障의 허용범위 내에서 진행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진행의 과탄은 軍備管理의 限界로서 나타난다. 60년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다수를 접하게 된 新興獨立 國家들은 NPT體制下에서 非核國家로서의 被差別的 地位에 익숙해져 동서군사동맹체제의 核戰略을 거부하면서 국제연합에 軍縮交渉의 場을 되돌린 國際聯合軍縮總會의 推進役으로 되었다.

SSD I 最終文書가 軍縮을 安全保障의 前提라고 한 것은 軍事同盟體制에 대신하는 國際聯合集團 安全保障體制의 復活 및 強化를 추구하면 갖게 되는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이 발상은 軍縮이 실현되지 않으면 新國際經濟秩序(NIEO)도 실현불가능이라고 하는 발전도상국이 공유하는 認識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發想에 근거하는 軍縮의 방향은 軍備管理가 아니고 全面的 完全軍縮을 지향하는 포괄적 군축계획의 실현에 있다는 것도 2

회의 軍縮總會에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軍縮을 위한 努力의 주역은 오늘날의 軍事大國보다도 오히려 非同盟國家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국가와 核戰爭의 위협 앞에서 反核을 호소하는 諸國家의 軍縮NGO 등에 걸친 폭넓은 여론의 소리인 것이다. 이와같이 담당주역이 국제연맹 시대와 크게 다른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國際社會의 構造變化가 核戰爭에 의한 世界의 終焉의 위기감 속에서 진정한 軍縮問題를 전면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더욱이 많은 軍縮措置는 특히 核軍縮은 주로 미국 등 軍事大國을 향한 것으로 主權國家의 병존이라는 國際社會의 現狀을 전제로 하는 限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條約의 形態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軍縮條約의 交渉과 締結에 관하여 國際法的 觀點에서의 檢討가 必要不可缺하다.

三. 國家의 安全保障과 軍縮國際法

國際社會에 있어서 국가의 安全을 保障하는 방법은 同盟과 集團安全保障으로 구별된다. 동맹은 국가의 大립을 전제로 하여 몇 개국이 힘을 합쳐서 第三國에 대항하고 세력균형에 의하여 安全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集團安全保障은 어느 國家群이 條約을 체결하여 서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그 중의 한 國家가 다른 국가를 공격한 경우 그 외에 다른 條約當事國은 협력하여 공격한 국가에 대항하여 공격당한 국가의 安全을 지킨다. 동맹이 當事國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대항적 성질을 갖는데 반하여, 集團安全保障은 당사국 내부에서 상호의 견제에 의하여 平和를 유지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18~9세기의 유럽 국제사회에서는 동맹이 지배적이었으며 20세기는 국제연맹·국제연합 등에 의한 集團安全保障의 時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安全保障의 構想은 어느 時代 어느 地域에도 있었고 또한 실제로 국가가 安全保障方法으로서 채용하였던 것이 이 둘 중의 어느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는 몇 개의 同盟條約으로 國際社會의 安全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질 때도 同盟이 날카롭게 대립한 긴장관계에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상호 견제함으로써 平和가 유지되기도 한다. 국제연맹 또는 국제연합의 集團安全保障體制下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맹으로 인정되는 세력이 존재하였다.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두가지의 安全保障體制가 상호교차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근대 유럽의 국제사회는 1648년의 Treaty of Westphalia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主權國家間의 條約이 成立됨에 따라서 法的으로 조직화되어 가지만 유럽사회 그 자체가 동일한 文化的, 道德的價値로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18세기에 이르러 안정된 사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등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5개국이 중심이 되어 勢力均衡의 原則이 인정되고 있었다. 集團安全保障이라는 사고는 전혀 주장되지 않고 단지 세력균형원칙의 유지와 국왕, 귀족의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이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논의되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국제연맹과 같은 集團安全保障構想의 原形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저서 「永久平和를 위하여」가 1795년 공간되었다.

19세기의 전반은 전세기말부터 1815년에 이르는 사이의 소위 「나폴레옹 전쟁」 종료 후에 만들어진 「Vienna 體制」에서 시작된다. 이 體制는 세력균형을 기본원칙으로하고 프랑스가 다시 강대해져서 유럽의 平和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어느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대불동맹(四國同盟)」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동시에 Vienna체제는 국제와 국내 양면에

서 유럽의 舊秩序維持의 보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프랑스도 1818년에는 이 동맹에 가맹하여 (五國同盟) 현상을 五大國이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서 국제문제를 모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유럽의 평화를 위하여 「會議體制」 혹은 「歐洲協調」體制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歐洲協調體制下에서는 강대국은 항상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의무」를 의식하고 5대강국의 지위는 특별히 존중되어 모든 문제를 5대강국의 합의로써 해결하는 운영이 행해졌다. 이 체제는 법적으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었고 또한 그 행동원리에 관한 규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集團安全保障에 가까운 構成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815년의 Vienna회의에서 Swiss의 永世中立을 유럽의 강대국이 보장한 제도도 一種의 集團安全保障體制였다고 할 수 있다.

18~9세기의 유럽국제사회에 있어서 모든 國家는 다른 國家와의 동맹관계 하에서 그의 安全保障에 노력하고 왔으나, 동맹의 내용은 다양하여 항상 반드시 대립적인 성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대부분은 대국에 의한 유럽의 평화 혹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균형정책으로부터 창출되고 또한 강대국의 협조에 의하여 유럽의 다른 약소국의 安全保障問題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동맹은 그 후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의 三國同盟(1882) 및 이것에 대항하여 형성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三國協商(1907)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이들 두 동맹이 第一次世界大戰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同盟은 集團安全保障에 대비되어 국가간의 대립을 부추겨서 전쟁을 야기시킨다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第一次世界大戰後 국제연맹에서 集團安全保障體制가 실현된 배경에는 第一次世界大戰이 종래의 전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참상을 人類社會에 남겼기 때문에 18~9세기의 無差別戰爭觀이 비판되고 戰爭의 違法化가 시도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연맹규약에 의하여 여태껏 국가로서는 전혀 자유이었던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연맹규약에 위반하여 행하는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에 대해서 연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국제연맹에서 구체화된 集團安全保障體制는 국가간의 상호견제에 의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되었고 종래의 集團安全保障體制보다도 일보 전진한 것으로서 國際社會全體의 평화, 환연하면 사회에 있어서 「公的安全」을 중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에 입각한 集團安全保障體制下에서는 연맹국은 위반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의무를 갖게 됨으로써 당연히 그 國家의 中立國으로서의 지위도 또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 규모로서 전쟁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각국의 軍備에 대한 規制(軍縮)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본래의 集團安全保障體制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등의 國際平和機構의 成立과 더불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국제연맹설립후 第二次世界大戰開始까지의 20년간에 이사회 또는 총회가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하여 연맹규약 第11~15條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중에 약간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협력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연맹의 여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건도 다소 있었다. 특히 연맹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관여한 대부분의 사건은 연맹에 의한 해결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국간의 直接交渉으로 해결되었다. 예를 들면 1927년의 영·미 양국군함의 남경포격사건, 1928년의 濟南事件(일본과 중국간 분쟁) 및 1928년의 중·소분쟁 등 모두가 武力行使를 야기하였지만 국제연맹은 그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31년 상임이사국인 일본과 중국간에 만주사변, 상해사변 등의 일본과 중국간에 분쟁이 야기되어 그 문제해결에 대해서 연맹총회가 33년 2월 권고안을 全會一致로서 채

택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이에 반대하여 3월 연맹으로부터 탈퇴하였다. 또한 1926년부터 상임이사국이 된 독일도 33년 軍縮會議에서 독일이 주장하는 軍備平等權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軍縮會議 및 國際聯盟으로부터 탈퇴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연맹은 그 성립후 어느 기간 동안은 주로 약소국가간의 분쟁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평화적 해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강대국이 관계된 분쟁에서는 강대국 자신이 분쟁해결에 국제연맹이 개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 때문에 국제연맹도 또한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더욱이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 후에는 國家間的 協調體制가 없어지고 또한 그 후의 국제분쟁에는 강대국이 당사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1931년의 일본과 중국간의 분쟁처리에 실패한 후부터는 국제연맹은 분쟁처리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 1929년에 시작되는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제국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 중에서도 經濟的基盤이 약한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의 후진적 자본주의국가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타개를 위하여 일본은 중국에의 무력공격, 독일은 第一次世界大戰後의 Versailles體制 破棄를 이유로 하여 再軍備와 주변국가의 합병 또 이태리는 에치오피아 점령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의 外交政策이 국제연맹에서 비난을 받게되자 1933년 일본과 독일이 이어 1937년 이태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여 集團安全保障體制로서의 國際聯盟은 有名無實化되어 버렸다.

국제연맹 및 Locarno條約으로 實現된 集團安全保障體制는 충분히 기능할 수가 없었고 (1936년 독일은 Locarno條約을 파기하였다.) 세계는 일본, 독일, 이태리 三國의 樞軸國과 이에 대립하는 세력인 영국, 프랑스, 미국 및 소련 등의 국가들의 둘로 나뉘어서 第二次世界大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국제연맹의 集團安全保障體制가 실패로 끝나고 第二次世界大戰이 일어났지만 종전 후의 國際平和秩序의 維持는 역시 集團安全保障體制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전후의 세계정치가 미국의 지도력으로 추진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미국 자신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集團安全保障體制의 결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신이 참가하여 보다 강력한 體制를 만든다면 국가의 안전과 국제평화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國際聯合憲章은 연맹규약에 사용된 「戰爭」의 단어를 바꾸어서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의 行使」를 모두 違法으로서 禁止하고²⁴⁾ 「平和에 대한 위협, 平和의 破壞 및 侵略行爲」의 존재를 결정하는 권한을 安全保障理事會에 부여하였다.²⁵⁾ 또한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平和 및 安全을 維持하고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권고를 한다.」 특히 軍事的 및 非軍事的인 制裁措置를 취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²⁶⁾ 더욱이 安全保障理事會

24) 國際聯合憲章 第2條 3,4項

③ 모든 加入國은 그의 國際紛爭을 平和의 方法에 의하여 國際의 平和 및 安全과 正義를 위협하게 하지 않도록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모든 加入國은 그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의 行使를 어떠한 國家의 領土保全 또는 政治的 獨立에 對한 것도 또한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도 금한다.

25) 국제연합헌장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리고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고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좇아서 어떠한 措置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6) 國際聯合憲章 第41條, 安全保障理事會는 그의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武力의 使用을 동반하지 않는 어떠한 措置를 使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이 措置를 적용하도록 국제연합 가입국에 요청할 수가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수통신의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및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가 있다.

의 결정은 가입국에의 구속력을 가지고 가입국은 그것에 좇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²⁷⁾ 국제연합의 安全保障體制는 연맹의 체제에 비해서 대단히 조직적이고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은 구속력 있는 安全保障理事會의 결정에는 5개常任理事國을 포함한 7개理事國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하여 소위 「5大國의 拒否權(veto power)」을 인정하고 있다. 이 拒否權制度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중요문제에서는 強大國(常任理事國)의 全員一致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실제적 고려에서 설립된 것으로 따라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다수결로서 自國이 중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국제연합헌장은 연맹보다도 대단히 이상적인 集團安全保障體制를 이루었지만 이것도 또한 5개強大國의 拒否權行使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安全保障理事會를 중심으로한 국제연합의 集團安全保障體制와는 별도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다른 또 하나의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憲章 第51條의 「集團的自衛權」으로서 이것은 어느 國家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국가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그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항하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國際聯合憲章은 集團的自衛權을 規定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제연합과는 별도로 새로이 지역적인 共同防衛體制(軍事同盟)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연합에 의한 集團安全保障體制의 弱體化를 초래하게 된 셈이다. 국제연합이 集團安全保障體制로서 국제연합의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憲章에서 平和破壞者에 대한 軍事的制裁措置를 규정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軍事制裁에 대해서는 憲章 第42 내지 47條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에 의하면 이와 같은 軍事措置는 각 加入國이 각종의 軍事協力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것은 각 加入國과 安全保障理事會와의 개별적인 「特別協定」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합성립후 이와 같은 協定은 하나도 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集團安全保障을 目的으로 한 安全保障理事會가 各國에 破壞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勸告의 效力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自由主義諸國, 소련을 중심으로 한 社會主義諸國 및 中立的立場을 취하는 非同盟諸國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먼저 1948년 東歐諸國의 社會主義諸國에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Benelux三國에 의한 西歐同盟(Western European Union, WEU Brussels條約, 현재 9개 당사국)이 형성되고 다음해 49년 미국과 서구12개국은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현재 16개 당사국)을 결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1955년 소련과 東歐諸國도 Warsaw條約機構(WTO 당시 8개 당사국)를 성립시켰지만, 이 2개의 條約은 모두 條約 當事國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集團的自衛權으로 加入國 全部가 공동방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대립하는 軍事同盟이라는 것이 명백하였다.

또한 Asia국가들 중 일본, 한국 등은 미국과 북한, 베트남 등은 소련과 각각 安全保障, 상호원조 혹은 우호협력 등의 條約을 체결하고 두 強大國과의 軍事的 同盟關係를 強化하였다. 이외에 이들 條約과 다른 성격을 갖는 局地的인 集團安全保障體制로서 1947년의 미주상호원조조약(Rio條約)과 1950년의 Arab연맹제국 공동방위경제협력조약 등도 형성되었다.

27) 국제연합헌장 제25조, 국제연합가입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좇아서 受諾하고 그리고 履行하는데 동의한다.

유럽에 있어서는 Warsaw條約機構(WTO)해체 후 새로운 秩序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당초 긴장완화와 상호의 安全保障을 목적으로 1975년 발족하였던 「全歐安全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CE)」(참가국35)는 냉전종결 후의 오늘날 크게 변혁하여 1992년 52개국이 참가하여 「Helsinki문서92」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北大西洋條約機構와 Warsaw條約機構를 포함한 유럽과 북미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평화와 안전보장질서를 위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體制를 만들려는 것이다. Asia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地域的 集團安全保障體制가 형성되어질 전망은 없고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등 個別國家間的 安全保障條約을 軸으로 하여 지역의 安定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제연합의 역사에서도 분명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集團安全保障體制속에서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個別國家間的 安全保障, 相互援助, 友好協力 등의 同盟條約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冷戰이 끝난 현재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변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국제연합에 의한 集團安全保障體制와 함께 각 地域에 만들어지는 地域的 集團安全保障體制와 個別國家間的 同盟條約 등 몇 개의 安全保障을 위한 構造 속에서 국가는 그의 安全의 維持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集團安全保障은 많은 國家가 集團的으로 힘을 합쳐서 相互間에 國家의 安全을 보장하려는 制度이지만 거기에서는 개개의 國家의 전쟁의 자유는 제한되고 혹은 부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약속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한 加入國에 대해서는 다른 加入國은 협력하여 違反國에 制裁를 가하게 된다. 이 制裁의 내용은 여러 가지여서 그 國家에 파견되고 있는 外交使節의 철수 勸告 등의 措置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經濟制裁와 軍事制裁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制裁(sanction)」라는 말은 가끔 國際政治上에 使用되었으며 또한 그 現象面만을 보고서 「軍事制裁」, 「經濟制裁」 등의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制裁」란 國際法上的 用語로서 이것은 國際社會의 規範으로서의 國際法의 違反에 대한 反應 혹은 對應으로서의 制裁이다.

國際聯盟規約은 第16條에 「制裁」라는 條文을 두고 「規約 第12, 13, 15條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한 國家는 다른 모든 連盟國에 대하여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위반國에 대해서는 經濟的制裁를 가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은 連盟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連盟國의 規約에 위반하는 전쟁개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른 連盟國자들이 制裁를 가하는 것을 義務지었다. 그리하여 이 制裁手段의 내용은 貿易의 停止, 金融의 停止 및 人的往來의 禁止 등이 있어서 이와 같은 連盟國의 制裁義務를 지키지 않는 國家(連盟가입國 이외의 國家도 포함하여)에 대하여 다른 連盟國이 그 禁止를 모든 군사력을 사용하여라도 강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제연맹의 制裁는 보통 「經濟制裁」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戰時에 군사력을 사용하여 행하는 經濟的封鎖와 같아서 이와 같은 封鎖를 행하는 連盟國도 自國의 전쟁필수품의 보급을 위하여 封鎖線을 돌파하려고 하는 違反國과의 사이에서 당연히 軍事的 衝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연합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의 중요한 요소가 유효하게 기능하였기 때문에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에 근거하는 制裁는 완전히 실시되어 成功한 바 있지만 그러나 장래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동일하게 安全保障理事會가 언제나 효과적인 對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국제연합헌장 第7장에서 평화파괴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制裁로서 국제연맹의 經濟制裁에 덧붙여서 軍事制裁를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연합헌장이 예정한 국제연합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950년의 한국동란에 있어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에 근거하여 국제연합가입국의 각 國家의 軍대로 형성된 「國聯軍」이 조직되어 북한군 및 中共軍과 싸웠다. 단지 이 國聯

軍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연합의 集團安全保障體制下에서 軍隊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동란에 있어서의 國聯軍은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소련이 결석하여 拒否權行使가 없었기 때문에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소련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의 拒否權行使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國聯軍의 組織化는 容易하지 않았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拒否權에 관계없이 國聯軍을 조직하는 方法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1950년 11월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決議」가 採擇되었다. 이 決議는 平和가 파괴되는 경우 安全保障理事會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총회가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軍隊의 使用를 포함한 措置를 가입국에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構想에 대해서 가입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決議를 구체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국제연합총회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시도는 1956년 Suez분쟁이후 새로운 형태의 「國聯軍」을 만들게 하였다. 이것은 「平和維持活動(PKO)의 國聯軍」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局地的인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으로부터 소규모의 군대 내지 군사감시단이 파견되어 사태의 평온화를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8월 Iraq軍에 의한 Kuwait점령에 대하여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철퇴를 요구하여 經濟制裁를 포함한 여러가지 決議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11월 이들 決議의 實行을 위하여 武力行使를 容認하는 決議가 이루어져 「多國籍軍」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國際聯合軍」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국제연합결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형성되었고, 그의 軍隊가 30개국의 국제연합가맹국으로부터 파견되었고, 그리고 그 軍事行動은 국제연합가맹국으로부터 多額의 戰費가 제공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실질적으로는 國際聯合軍에 準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國際聯合憲章 제43조는 모든 국제연합가입국이 「國際의 平和 및 安全의 維持에 공헌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와의 사이에 個別的으로 체결된 特別協定에 의하여 필요한 兵力, 援助 및 便益을 安全保障理事會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協定은 「兵力의 數 및 종류, 그의 出動準備 程度 및 一般的 配置와 제공해야 할 便益 및 援助의 性質을 정한다(제43조2항)」라고 되어 있어서 그 便益 中에는 外國軍隊의 自國內 通過의 權利와 基地 使用의 權利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국제연합이 긴급한 경우에 즉각 軍事的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제45조에서 특별히 「空軍 割當部隊」에 관하여 規定하여 국제연합가입국은 국제적 강제 행동에 협력하기 위하여 각 加入國이 그의 空軍 割當部隊를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聯軍의 構成으로 볼 때 그것은 국제연합이라는 國際機構에 상설된 것 國際的 軍隊가 아니고 각 加入國이 미리 병력분담계획을 제공하고 그 使用를 국제연합에 위임한 軍隊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보조기관으로서 常任理事國5개국의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지는 軍事參謀委員會가 형성되어 이 委員會가 兵力의 使用와 指揮 및 戰略的 指導를 맡게 되었다. (제46조, 제47조)

「平和維持活動(Peace-Keeping Operations, PKO)」이란 말은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1960년대의 국제연합활동으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用語이다. 이 「平和維持活動」이란 平和를 위협하는 局地的인 紛爭과 事態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소규모의 軍隊 내지 軍事監視團을 파견하여 이것을 수습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같은 平和維持活動에 참여한 軍隊와 軍事監視團은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強制措置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국제연합이 당초 예정한 集團安全保障制度에 대신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국제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平和維持를 위한 잠정적인 방지조치로서 행해

지고 있으므로 「國聯軍」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일컬어진다. 그리고 多國籍軍은 개개의 국가의 自主的 判斷에 의하여 편입된 동맹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지휘는 각 국가의 방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은 강대국인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그의 經費는 周邊 國家 등의 援助에 의한다. Gulf전쟁의 경우 그 내역은 Saudi Arabia가 198억불, Kuwait가 185억불, 일본이 130억불, 독일이 89억불 등 총 690억불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연맹 이래의 군축노력은 그때 그때의 國際政治의 동향에 의하면서도 연맹규약과 국제연합헌장이라는 基本文書의 테두리 내에서 교섭을 반복하여 약간의 條約과 多數의 決議 등을 생성하였다. 이것을 전체로서 軍縮國際法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면, 현대 국제법체계하에서 그 기본적 성질을 맨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軍縮國際法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의 形式과 내용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一般條約(基本條約) 中の 一定 規定(基本原則)을 구성하는 것, 軍縮과 軍備管理를 위한 다수국간 또는 2개 국가간 條約과 協定, 국제연합군축 총회의 最終文書와 같은 國際組織의 決議, 국가의 一方的(政策) 宣言 등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武力行使의 禁止와 制限 그리고 安全保障과의 관련에서 軍縮의 一般原則을 定한 것, 구체적으로 특정무기와 군수품의 생산, 저장, 이전 내지 사용의 금지, 제한을 定한 規定으로부터 一定한 軍縮措置를 실현하기 위한 交渉을 義務지우는 規定까지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軍縮에 관련된 文書나 規定을 일괄하여 現代國際法의 一部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의 法的性質을 긍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군축관련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現代國際法 規範의 把握方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國際法의 法的性質을 그 내용이 當事國間에 명확한 권리의무를 생성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執行可能한 規則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협의로 한정한다면 軍縮國際法의 상당한 規則은 그의 法的性質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견해를 철저히 따르게 되면 오늘날 主權國家의 병존관계를 유지하고 集權的인 法執行機關을 갖지 않는 現代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의 法的性質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국제법 부정론은 거의 사라져 버린 셈이다. 法的性質을 갖는 規則을 협의로 한정하는 견해도 반드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보다 광의로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는 權利義務關係에 불명확함이 남고, 혹은 효과적 집행의 방법이 규정되고 있지 않더라도 法的性質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더욱이 형식적으로도 정식의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국제연합총회 결의와 국가의 一方的 宣言조차 그 一定한 것에는 法的性質을 긍정하려는 경향까지도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정한 국가들로부터 (總會決議에 관해서는 서방측국가들로부터, 一方的宣言에 관해서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異論이 표명되었고 또한 學說上에도 一致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으로는 軍縮關係의 條約과 決議에 관해서도 國際經濟關係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많은 것을 Soft law로서 혹은 「非拘束的(非法律的)」 規範으로 分類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縮國際法 중에는 명확한 權利義務關係를 규정하고 그것이 실시되어 이행될 것을 국가가 기대할 수 있는 規則(소위 Hard law)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軍縮에 관한 일정한 條約規則은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軍縮國際法 가운데는 반드시 집행가능한 權利義務를 규정하지 않고 내용이 애매하여 거의 強制力은 없지만 일정한 테두리를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規範(Soft law)도 존재한다. 더욱이 Soft law의 범위를 대폭 廣義로 해석하여 예를 들면 의무이행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또한 그의 집행이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한 의무를 규정한 條約 그리고 그의 위반이 상대 당

사국에게 스스로 이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나아가서 그 文書에 의하여 禁止되어 있는 행위에 호소할 수 있는 선택을 허락하는 條約까지도 Soft law에 포함하려는 견해가 있다.²⁸⁾ 이것에 의하면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명확한 條約規定일지라도 거기로부터의 탈퇴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條約規定의 준수는 불안정하게 되어 Soft law로 분류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軍縮關係條約은 Soft law로 인정되어 그 法的 拘束力 그 자체조차도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²⁹⁾ Soft law의 존재는 국제법체계의 특징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軍縮關係條約 가운데 자주 삽입되는 장래의 교섭의무를 定하는 規定을 Soft law라고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교섭의무는 추후의 條約締結(合意)을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good faith)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이루어야 할 合意(義務)를 의미한다. Pacta de contrahendo에 屬한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될 때 유효한 의무를 생성시키고, 條約締結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의무에 위반하게 된다.³⁰⁾ 이 의무는 조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 내지 현재 또는 장래의 조약에 가입해야 할 의무에는 이르지 않고, 그것을 교섭해야 할 의무에 지나지 않지만, 國際判例에 의하면 「교섭을 개시하는 것만이 아니고, 합의에 달하기 위한 가능한 한의 교섭을 계속해야³¹⁾」만 할 의무이고 특히 최근의 國際司法裁判所判決에 의하면 「당사국은 단지 명백한 교섭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교섭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³²⁾」라고 단언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pacta de contrahendo의 법적성질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條約을 교섭하고 또한 체결하는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基本條約에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층 더 상세한 條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레벨에서의 non-self-executing한 條約規範이 있다. 이것은 특히 第2次 世界大戰後의 軍縮분야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戰略武器制限交渉(SALT) 過程에서의 약간의 합의(協定) 등이다.

軍縮關係決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번의 軍縮特別總會(SSD I, SSD II)에서 合意採擇된 文書(특히 SSD I의 최종문서)의 법적 중요성이다. 이 文書는 내용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하여 一律적으로 그의 법적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宣言」 속에 基本的으로는 국제연합헌장의 軍縮原則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憲章의 목적과 정신을 구현하는 面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軍縮計劃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規定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計劃은 후에 실현되어야 할 테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國家의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要컨데 總會決議를 一律적으로 혹은 一般化하여 그의 법적성격을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고 決議採擇의 狀況, 決議內容과 表現을 참작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縮에 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條約化(全面完全軍縮)를 바라면서 各 國家가 一方的 措置를

28) Baxter, R. R., "International Law in 'Her Infinite Varie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29, (1980) pp. 550-566.

29) Soft Law의 性質에 관해서는 이것을 法 이전의 價値를 갖고 있는 비규범인 것(義務)이라고 보는 견해와 거의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法規範性を 긍정하는 견해로 學說上 나누어져 있다.

30) McNair, Law of Treaties. (1961), pp. 27-29, pacta de contrahendo에 관해서 「誠實한」 교섭을 중시하는 견해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1953), pp. 17-18)

31) 常設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의 意見(Lithuania Poland間 鐵道輸送事件), 1925年 Chile Peru間 Tacna-Arica 事件仲裁判決에 관하여 Schwarzenberger, G., International Law, Vol. 1, 3rd Ed. (1957). pp. 440-441.

32) 國際司法裁判所判決(北海大陸棚事件) ICJ Reports, (1969). par. 85, p. 47.

취할 때가 있다. 一方的인 核實驗 中止 宣言, SSD I의 경우 各 核保有에 의하여 聲明된 非核國家의 安全保障(核武器不使用)에 관한 宣言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一方的 宣言도 단순한 政策表明의 틀을 넘어서서 法的 效果를 갖게 된다.

權利義務關係가 명백한 條約으로부터 一方的 行爲에 이르는 軍縮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여러 국가에 의하여 취해진 諸措置는 現代國際法中에 정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軍縮國際法으로서의 體系化까지 可能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Soft law와 總會決議의 채용은 分析的 體系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國際法의 基本構造의 약점 내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形式을 취한 軍縮措置의 전진은 現代國際法의 목적과 性格에 合致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軍縮法體系는 국제연합체제 하에서 軍備의 評價 및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軍縮義務의 形成(軍縮의 原則)을 基底에 갖는다. 국가의 軍備維持의 법적정착은 戰爭違法化와 集團의 安全保障體制의 확립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차세계대전 이전의 無差別戰爭觀이 지배한 시대에는 各國의 軍備의 自由는 전쟁의 권리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성립 이래 軍備自由에 대신하여 軍備規制의 방향이 수립되었다. 금지된 전쟁은 이제 분쟁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한 集團安全保障體制가 확립된다면 전쟁을 위한 無制限의 軍備도 正當性을 잃게 될 것이다.

연맹규약 8조의 규정내용은 연맹국의 軍備를 안전과 공동행동에 의한 국제의무의 이행에 지장이 없는 최저한도까지 「削減」한다는 것으로 軍備의 「撤廢」는 아니었다. 최저한도의 軍備의 기준은 연맹이사회가 작성하는 案을 기다리기로 되었지만(8조 2항), 연맹의 역사를 통해서 軍縮會議準備委員會와 1932년부터의 軍縮會議 등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 軍縮問題 검토 중에는 그 基準은 결국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맹시대에 규약상 軍備의 自由는 正當性을 잃어버리고 그 規制가 연맹의 법적구조 내에 정착되어지면서도 規制의 基準조차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各 국가의 軍備를 최저한도를 넘어서는 過剩의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軍備의 自由와 다르지 않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第2次세계대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제연합헌장은 연맹규약 이상으로 戰爭違法化를 보다 철저화 하여 自衛權을 留保하면서 集團安全保障體制를 한층 더 정비하였지만, 軍縮問題에 관해서는 총회가 「軍備縮小 및 軍備規制를 規律하는 原則」을 審理하고(11조), 安全保障理事會가 軍備規制의 方法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26조)라고 규정한 것만으로 軍備의 명확한 정착은 이루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은 各 국가의 軍備의 量的, 質的許容限界를 定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基盤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限界를 넘어서는 軍備 즉 過剩軍備의 유지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法狀況이 생성된 것이다.

過剩軍備를 국제연합헌장에서 말하는 「平和에 대한 위협」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헌장의 기본원칙, 특히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行使의 禁止의 原則(2조4항)과 「平和에 대한 위협」의 決定이라고 한 규정(39조)으로부터 軍備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즉 特定國에 의한 일정 이상의 軍備의 유지와 特定武器의 보유를 「武力에 의한 위협」에 해당되고, 「그 계속 이 國際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事態」(34조)라고 인정하고 혹은 安全保障理事會(또는 總會)에 의하여 「平和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Kelsen은 이미 1951년에 출판한 「國際聯合의 法³³⁾」중에서 「加盟國이 그의 軍備削減을 준비하는 계획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安全保障理事會의 견해에 있어서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強制措置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33) Kelsen, H.,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1951), p. 16.

過剩軍備의 경우도 해당된다.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現代國際法에 비추어 諸國家가 軍縮을 해야할 의무를 지는가, 또는 적어도 그의 軍備를 삭감하고 규제하는 법적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국제연합규정의 해석과 다른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단지 헌장기초과정과 그 성립시에 있어서의 관련규정의 의미와 그 후에 여러가지의 軍縮交渉과 措置를 거친 바 있는 헌장해석은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고 오늘날에는 憲章의 현대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國際社會의 변동,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발전과 군비경쟁을 위한 그 이용은 여러 국가 특히 核保有國에게 軍縮과 軍備管理의 交渉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이러한 國際實行은 이 문제에 관한 國際法の 활발한 發展 특히 헌장의 관련규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軍縮條項은 국제연합가맹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타당하는 一般國際法上的의 義務로서 기초되었다. 友好關係宣言은 합의 채택된 國際聯合總會決議이고 條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軍縮條項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現代國際法の 諸原則의 국제연합에 의한 현대적 解釋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宣言에 있어서 헌장의 현대적 해석으로 특히 一般國際法으로도 모든 국가에 부과되어지는 성실한 軍縮交渉義務의 존재가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의무의 내용과 그 법적성격에 관해서 아직 명백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友好關係宣言 이후에도 국제연합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武力行使禁止 原則의 實效性 強化에 관한 特別委員會」에 있어서 武力行使原則과 軍縮의 관계를 논의하였다.³⁴⁾ 또한 1960년대 이후의 軍縮 또는 軍備管理에 관한 條約 中에는 이와 같은 軍縮交渉義務는 이미 명시적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軍縮關係條約 가운데 軍縮交渉義務의 내용과 그 법적성질은 어떤 것인가? 그 최초로 1963年 部分的核實驗禁止條約은 그 前文에서 「국제연합의 목적에 좇아서 엄격한 國際管理下에 있어서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軍縮에 관한 승의를 가능한 한 원만히 달성하여 그 승의에 의하여 軍備競爭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核武器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武器의 생산 및 실험에의 誘因을 제거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선언하고 核武器의 모든 實驗的 爆發의 永久的 中止의 達成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교섭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였다.

이 條約 이후의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軍縮關係條約은 一般條約으로서 1968年 核擴散禁止條約, 1971年 海底非核化條約, 1972年 生物武器禁止條約, 1977年 環境改變技術軍事使用禁止條約이 있고 地域的條約으로서 1967年 Latin America 核武器禁止條約, 미국과 소련 양국간의 SALT關係條約으로서 1972年 ABM條約, SALT暫定協定, 批准되지 않은 것으로는 1974年 地下核武器實驗制限條約, 1976年 平和의地下核爆發條約, 1979年 SSD II條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체결된 모든 軍縮關係條約이 어떤 것이든 軍縮交渉條項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前文 中에 全面完全軍縮의 가능한 한 원만한 달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고(SALT 관계조약은 核擴散禁止條約 6條의 義務에 언급) 本文 中에는 이 궁극적 목표 내지 관련의 條約의 當面의 目的實現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계속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4) 이 特別委員會는 1977年 國際聯合總會決議 32/150으로 설치되었다.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34/41, (1979) pp. 64 ff.)

그 후 1968년 非核國家會議, 1975년 NPT再檢討會議에서의 토의의 중심은 6條의 문제였다. 특히 NPT再檢討會議에서는 NPT發效(1970)이래 核軍備競爭의 조기중지 및 核軍縮에 관한 여하한 효과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NPT締約國인 核保有國(특히 미국과 소련)이 6條에 의해서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再檢討會議에 제출된 水平擴散의 중지와 垂直擴散의 중지를 합치시키는 것에 의하여 NPT締約國간의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취하려는 모든 제안은 核保有國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졌다. 결국 동회의의 최종선언 중에서 「會議는 條約6條의 早期 그리고 效果的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締約國 특히 核保有國에 의한 不斷하고도 確固한 努力을 요구한다.」라는 미온적 표현에 그쳤다. 이 宣言은 계속하여 「會議는 軍縮이 일반적 관심사항이므로 軍備競爭 및 軍縮分野에 있어서의 狀況에 관하여 모든 政府 및 人民에의 情報제공이 6條의 目的달성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고 하는 見解를 표명한다.³⁵⁾」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980년 第2回 再檢討會議에서 특히 非同盟國家를 중심으로한 非核國家는 6條에서 지게 되는 核保有國의 軍縮交涉義務가 NPT發效後 10년이 경과하고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결국 核保有國과의 妥協을 이루지 못하고 최종문서의 작성조차도 하지 못한 채 폐회하였다. 核軍縮의 구체적 내용과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교섭의무를 核保有國에 무급하게 이행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軍縮措置의 교섭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게 情報를 제공하여 널리 國際여론에 호소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의무이행의 구체적 조치로서 SALT 諸協定自體도 NPT 6條의 의무에 유의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非核國家도 6條로부터 交涉義務를 지고 있기 때문에 全面完全軍縮 특히 核軍縮의 진전을 촉진하는 交涉(核軍備를 無意味化하는 소극적 安全保障과 非核地帶化의 交涉도 그 중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要컨데 國際法發展의 現단계에서 軍縮義務의 法的性格을 끝까지 추궁하여 확정하려는 시도는 헛수고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軍縮義務가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狀況특히 「軍事化(militarization)」現象 中에서 이행되어 軍縮이 실현되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즉 軍縮義務의 实效性을 보장하는 條件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四. 軍縮의 形態와 軍縮條約

國際聯盟時代의 軍縮의 대상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一國家의 군사력의 총체이고 그것은 軍隊와 軍需品으로 구성되었다. 兵力의 規制에서 어려운 점은 그의 兵役期間과 豫備軍의 평가에 관해서였다. 軍需品은 軍備와 裝備로 구성되지만 그 중에서도 武器, 彈藥, 船舶, 航空機 및 要塞가 대상으로 된다. 陸軍에 관해서는 戰車와 重砲 등의 장비 외에 徵兵制, 志願兵制라는 國防體制의 規制가 문제로 되었지만 海·空軍에 관해서는 軍需品의 規制가 중심이었다. 예를 들면 海軍軍備制限에 관해서는 Washington條約과 London條約에서는 兵力數에 관해서는 전혀 規定이 없고 軍艦 ton數, 大砲數가 規制對象으로 되었다. 또한 三軍에 共通하는 規制對象은 武器 특히 化學, 細菌, 燒夷武器였다.

國際聯盟時代의 軍縮의 對象과 方法은 그대로 國際聯合時代의 그것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

35) SIPRI Year book, 1968~69, p.165.

다. 국제연합시대에는 국제사회의 상황이 동서 양대진영의 냉전 때문에 平和共存, détente, 第3世界의 신흥독립국가의 등장이라는 형태로 多樣化 되어있는 점 그리하여 軍備 가운데서도 特定武器의 開發과 技術的 發達이 현저하여 특히 核武器의 출현이 인류의 흥망을 左右하게된 狀況을 만들어낸 점이 국제연맹시대와는 다른 軍縮의 對象과 方法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제연맹시대와 국제연합시대의 軍縮의 對象과 方法에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에는 밀접한 유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연합시대의 軍縮對象의 첫째는 大量破壞武器 특히 核武器體系이다. 核軍縮에는 여러가지 측면의 접근방법(核實驗禁止, 核擴散禁止, 戰略核武器制限 등)이 행해져서 국제연합시대의 군축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核武器 이외의 大量破壞武器 특히 化學·生物武器의 軍縮問題도 Vietnam 전쟁을 계기로 주목을 끌게 되어 특히 新型大量破壞武器, 放射性武器에 관해서도 검토의 대상으로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一般武器에 관해서는 국제연맹시대와는 달리 그 規制의 움직임은 지연되어 겨우 최근어야 특히 非人道的 性質의 特定 一般武器의 使用規制의 條約이 체결되었다. 더욱이 武器를 포함하는 軍備一般에 관한 軍縮의 發想은 국제연맹시대에는 海軍軍縮條約 등의 형태로 육·해·공 각 군의 군비를 대상으로 시도한 데 대하여 국제연합시대에는 전혀 이와 같은 구별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全面完全軍縮案이라는 方法으로 포괄적인 軍縮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軍縮對象을 거기에 수렴하는 도달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맹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국제연합시대의 軍縮의 方法은 군축대상에 의하여 달라져서 국제연맹시대와 같이 계통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위 質的 軍縮은 核武器, 其他의 大量破壞武器의 規制와 在來式武器의 區別的 規制 중에 나타나고 量的 軍縮(내지 직접적 방법)은 SALT協定 등에 나타나 있다. 또한 精神的 軍縮에 해당하는 것은 戰爭宣言의 금지등을 定한 人權保障條約과 國際刑法의 기도로 특히 平和教育中에 나타나있다. 또한 地域的 軍縮 즉 일정한 地域(空間)으로부터 軍備를 제거하는 방법은 국제연맹시대에는 그 정도로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核武器의 출현이래 安全保障과의 관계에서 부상된 접근방법이다.

끝으로 質的 量的 方法 기타 여러 가지 方法을 종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全面完全軍縮, 包括的 軍縮計劃의 構想이 있다. 이것은 국제연맹시대에는 미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즉 세계의 종언을 야기할 수 있는 新武器(核武器)의 開發과 武器體制의 發達에 직면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수준을 넘어선 인류의 공존수준에서 軍縮을 構想할 필요성을 발생시킨 국제연합시대의 특징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全面完全軍縮의 방법이야말로 現代國際法에 있어서 軍縮交涉義務履行으로서의 具體的, 包括的措置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연합시대의 軍縮의 對象과 方法은 現代國際社會의 몇가지 要素(구성원의 다양성과 발전의 필요 등)에 의하여 촉진됨과 동시에 규제되고 있다.

軍縮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모든 條約締約國이 구속된다. 즉 일반적으로는 國際條約에 의한 締約國間의 雙方的 또는 相互的 軍縮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軍縮의 형태는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條約이 締約國의 一國 또는 한 쪽의 국가들에 게만 특정의 軍縮을 義務지우고, 다른 締約國에게는 그것을 의무지우지 않는 수도 있다. 平和條約에 있어서 패전국이 일반적으로 軍縮의 義務를 지게 되는 예는 역사상 허다하였다. Versailles 평화조약 외에 1954년 Paris協定에 의하여 西獨은 그의 영역 내에서 原子, 生物, 化學武器 기타 일정한 형태의 군수품을 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³⁶⁾ 이와 같은 一方的 軍縮은 그 당시의 정치·군사정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켜서 敗戰國의 先制에 의한 전쟁의 위험

을 피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는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다른 국가들이 같은 軍縮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國際狀況의 展開에 의한 이 一方的 軍縮은 오히려 不安定化될 수도 있다. 第一次世界大戰後의 狀況과 독일의 Versailles 平和條約 破棄에 따른 再軍備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敗戰國에게 반강제적인 軍縮을 강요하는 條約이 아닌 데도 당사국의 一方만에 일정한 軍縮義務를 지우는 예로서는 核擴散禁止條約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非核國家의 核武器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條約국간에 核軍備에 관한 不平等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體制는 비록 條約成立 당시 核강대국의 의도와 국제정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不平等을 받는 쪽의 條約국에게 결국 반발의 동기를 주게됨으로써 그 결과 條約關係의 不安定性은 피할 수 없게 된다.

條約에 의한 一方的 軍縮은 제1차세계대전 후의 전쟁위법에 있어서의 軍縮이라는 現代國際法的 要請에 반드시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옛날부터 약소국이나 패전국에게 一方的 軍縮을 條約의 형태로서 強制하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이 경우의 一方的 軍縮은 近代國際法下의 無差別戰爭觀에 의한 合法戰爭의 결과 혹은 힘에 의한 강제의 결과 과해진 것이었다. 이것은 강대국(승전국)을 위하여 약소국(패전국)에게 一方的 軍縮이 요청되는 것(不平等條約)으로 諸國家 내지 國際社會全體의 이익으로서 요청되는 것은 아니었다. 條約에 의한 一般的 軍縮이란 형태는 현대국제법 상황 하에 있어서도 특정국가의 힘에 의한 압력이 배경으로 되기 쉬워서 어차피 一方的으로 軍縮의 의무가 부과된 국가의 반발과 조약으로부터의 離脫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안정된 軍縮形態라고는 할 수 없다.

一方的 軍縮의 형태로서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군비를 포기 혹은 일정한 軍縮을 할 것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군비를 유지하고 더욱이 증강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스스로 對外政策의 일환으로 혹은 자국의 憲法規定에 좇아서 軍縮을 실시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초강대국의 一方的先制의 예로서는 1958~59년의 核實驗의 一時的中止, 1969년 미국에 의한 生物武器廢棄의 一方的宣言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一方的 軍縮措置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憲法과 對外政策이 변하면 바로 유지되지 못하고 一方的으로 포기되는 위험성이 있다. 一方的 軍縮措置가 一方的으로 철회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國際法違反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一國의 任意에 근거하는 一方的 軍縮措置라도 그것이 전혀 法的拘束力을 갖지 않는가의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自發的인 一方的 軍縮은 오늘날 국제법상 명확히 정립된 軍縮의 한 형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요컨대 軍縮은 一方的措置의 여부에 관계없이 現代國際法上 인정되어 있는 요청이고 그 발전방향도 승진되는 것이다. 國際法과 각국 憲法은 다른 次元의 法體系이지만, 憲法中の 軍縮規定은 現代國際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³⁷⁾ 그 위에 軍備競爭의 국제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도 軍縮의 일방적 선제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선제는 영속적인 條約에 이르기 위한 단계로 된다.³⁸⁾

36) Paris 協定中の 軍備管理에 관한 第二議定書 1~2條.

Documents on Germany 1944-195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59), p. 131.

37) 深瀬忠一, 「憲法における軍縮平和主義」(日本評論社, 1975年).

38) Epstein, W.,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 Some New Approaches," Disarmament: The Human Factor, Edited by E. Laszlo and D. Keys, (1981), pp. 28-29.

坂本義和 「軍縮の政治學」(岩波新書, 1982年) pp. 67-68.

오늘날 主權國家의 병존을 이루는 국제사회의 구조하에서 軍縮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속적인 형태로서는 諸國家間의 條約에 의하여 모든 締約國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雙務的 軍縮은 여러종류의 軍縮關係條約으로 결정되었다. 이 軍縮은 그 명칭이 어떻게 간에 條約이라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法成立形式(法源)을 취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一方的 軍縮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法的 拘束性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條約의 締約國 전부에 구체적 의무를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一方的 軍縮의 경우와 같은 강제와 압력에 의한 不平等을 피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條約形式에 의한 雙務的 軍縮이 國際法的 觀點에서 보아서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형식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거의 모든 軍縮關係條約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 보다 간단히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더욱이 조약인 이상 그것에 참가하지 않은 非締約國에 대해서는 구속성이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국가가 條約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요국가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형식의 조약에 의한 軍縮의 의의가 없어진다. 그로 인하여 보다 용이한 형식으로서 국제연합총회 결의가 빈번히 활용되고 또한 이 결의에 의하여 條約에의 참가가 권고되기도 한다.

第二次世界大戰後의 軍縮對象中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武器體系였다. 특히 核武器를 비롯한 大量破壞武器의 規制問題가 軍縮努力의 중심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核軍縮을 둘러싼 교섭은 전후의 軍縮交渉史 그 자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외의 大量破壞武器에 관해서는 화학, 生物武器의 規制問題가 중심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규제는 核軍縮의 그늘에 가려서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이 종류의 무기의 다양화와 비인도성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 이런 종류의 武器를 둘러싼 개개의 軍縮努力외에 全面完全軍縮과 包括的 軍縮計劃의 기도로서 모든 무기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核軍縮의 가야 할 목표는 核武器體系의 撤廢 즉 실험, 생산, 저장 등의 完全禁止를 定하는 條約의 체결이지만 국제연합시대의 軍縮交渉中에서 이 방향으로의 직선적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국제연합 발족 당시의 단계에 있어서의 제안중에는 이와 같은 방향을 시사하는 것도 있었다. 軍縮總會後 改組된 제네바軍縮委員會(CD)에서 「核軍備競争의 中止와 核軍縮」이라는 의제가 채택되었지만 SSDⅡ에 이르기까지 核軍縮의 구체안에 관한 교섭의 진전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核軍縮의 一環으로 볼 수 있는 「核凍結(Nuclear Freeze)」의 요구가 특히 미국의 議會와 反核運動 속에서 강화되었다.³⁹⁾ 그러나 條約으로서 成立된 것은 核實驗制限, 核武器擴散禁止, 戰略武器制限 등의 사항에 그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核軍縮의 一部分을 구성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軍縮管理에 屬하는 것이다.

核軍縮에 관한 구체적 조치로서 최초로 성립한 것은 1963년의 Moscow核實驗禁止條約이었다. 그런데 核實驗問題가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4년 3월1일 南太平의 비키니섬에서 행해진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에 의한 일본의 第5福龍丸의 피해가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간의 地下核實驗條約과는 별도로 포괄적인 一般條約締結에의 움직임에 대해서 1963년 Moscow條約(PTBT)이후도 核保有國의 地下核實驗에 관한 査察과 檢證을 둘러싼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 시기에는 물론 非同盟國家들이 여러가지 제안을 하였다.

39) 軍備를 삭감하기에 앞서 軍備競争을 중지하고 또한 그것을 「凍結한다(Freeze)」라는 발상은 지금까지의 軍縮討議中에서도 표명되고 SSDⅠ 최종문서(50항)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주로 미국 내의 核凍結운동을 통하여 SSDⅡ에 제의되었다. Kennedy, E. M., and Hatfield, M. O., Freeze: How You Can Help Prevent Nuclear War. A Bantam Book. (1982)

1964년 18개국 軍縮委員會(ENDC)에 제출된 非同盟 8개국의 共同覺書는 모든 核실험을 비난하는 총회결의 1762A(XVII)를 상기하고 地下核實驗의 검증문제로서 核保有國間에 相違가 있지만 이와 같은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核保有國間에 탐지와 식별기술을 개량하는 과학적 그리고 기타 정보교환이 포괄적 실험금지의 달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1965년 Sweden은 지진자료교환에 의한 지하폭발의 탐지에 관한 국제협력을 제안하고 다음해에는 「異議申請에 의한 實證」 또는 「招請에 의한 査察」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NPT 성립 후의 1968년 非核國家會議의 決議는 ENDC가 1969년 3월 이전에 최우선사항으로서 包括的核實驗禁止의 체결교섭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제연합총회에 요청하였다.

核武器擴散禁止의 발상은⁴⁰⁾ 1950년대 중반에 原子力平和利用과의 관련에서 생겨났다. 1955년 원자력평화이용에 관한 제네바회의, 1957년 國際原子力機關(IAEA)의 설립에 의한 원자력평화이용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촉진은 동시에 核武器水平擴散禁止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1960년의 프랑스에 이어서 1964년 中國의 최초의 核實驗成功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NPT작성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와 협의한 후 1965년 8월 ENDC에 核武器擴散禁止條約案을 제출하고 같은해 9월 소련도 第20回 국제연합총회의 모두에 자신의 條約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소련 각각의 條約案의 내용은 세부에 있어서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히 核保有國과 非核國家 쌍방을 향한 것이었다. 특히 核保有國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軍事同盟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非核國家의 관리 하에 核武器를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구하였고, 非核國家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각 條約案 모두 核武器의 관리 또는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신조약안은 1968년 3월 ENDC에 제출되고 그 위에 부속의 보고서(미·소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와 함께 국제연합총회의 심의를 위해 부탁되었다. 이 案이 총회 第1委員會에서 약간 수정을 거쳐서 채택되고 6월12일 본회의에서도 채택되었다(決議 2373(XXII)). NPT는 모든 정부의 서명 및 비준에 넘겨져서 1968년 7월1일 서명을 위해서 개방되고 같은날 미국, 영국, 소련, 일본을 비롯하여 56개국이 서명하였다. 1970년 3월5일까지에 미국, 영국, 소련을 포함한 4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같은 날 效力을 발생하였다.⁴¹⁾ 프랑스는 NPT에 서명은 아니하지만 장래 이 분야에서 條約國과 행동을 같이 한다고 성명하고, 中國은 NPT가 非核國家의 主權을 褫탈하고 많은 국가의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한다고 논평하였다.

核, 生物, 化學武器외에 大量破壞武器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대량파괴무기를 어떻게 定義하는가에 따르게 되지만 新型大量破壞武器로 간주될 수 있는 放射性武器 및 環境破壞武器는 오늘날까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아니고 미래의 무기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적 규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군비의 유지와 증강은 군사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2차세계대전후의 諸國의 軍事費支出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의 연간군사비

40) 黑澤滿 「核武器擴散禁止條約體制の 起源」 法政論集 15卷3號.

41) 1968년 소련의 체코개입, 이란사건의 발생으로 미국 상원에서의 NPT승인 작업이 늦어져서 Nixon정권성립후 겨우 1969년 2월25일 上院外交委員에서 NPT승인 3월13일 上院本會議에서 條約批准承認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의 동시 비준을 제안하여 1969년 11월24일 미·소간 동시비준이 행해져서 1970년 3월5일 비준서 기탁이 Washington, London, Moscow에서 행해졌다.

의 평균은 양차 세계대전 기간의 그것에 비하여 5배가량에 달한다. 최근의 동향은 SSD I (1978)부터 SSD II (1982)에 이르는 4년간에 세계의 군사비는 1조6천억불을 넘었다. 1977년의 군사비 지출이 3천5백억불이었지만, 1981년에는 그것은 5천5백억 내지 6천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총생산고의 약6%에 이른다.⁴²⁾ 이와같은 軍事費의 增大傾向 중의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6대주요군사대국의 군사비가 세계군사비 지출의 약70%를 점하고 그 가운데 초강대국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군사비 지출의 약75%는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고 16%가 발전도상국들의 부담이 되어있다.⁴³⁾

이와 같이 軍事費에 관한 국제연합의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군사비 삭감이 國際協定에 의하여 달성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軍事費에 관한 국제연합보고제도에 자유세계국가들만이 호의적이고 발전도상국조차도 비협조적이다. 요컨대 구체적인 군사비는 국제연합체제 하에서도 각국의 국가예산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主權事項이라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아직 세계각국이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에 속하는 현상 하에서는 그의 自發的 抑制는 말할 것도 없고 國際的 合意에 의하여 相互削減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신뢰구축 등 기타의 요소와 조치들을 구사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여러가지 事項的, 地域的인 軍縮措置와 그 提案은 現代世界의 軍擴狀況 속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일정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全面完全軍縮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개의 조치가 전면완전군축에 이를 것인가, 軍備自由를 구실로 삼아 諸國이 軍備競爭을 촉진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全面完全軍縮 및 그 過程을 構想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軍縮의 의미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法狀況과 法制度의 展開와 함께 發達하여 왔다. 국제연맹시대에는 全面完全軍縮의 발상은 여전히 不完全하였고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全面完全軍縮의 意味가 展開되고 더욱이 그 具體的 提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국제연합시대부터인 것으로 1960년대부터의 일이다. 第二次世界大戰을 中心으로 국제연맹에서부터 국제연합으로 國際社會의 組織化가 점진적 진보를 하고 戰爭違法化와 集團安全保障體制가 한층 더 完備되게 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제2차세계대전말의 원자폭탄 사용이래 人類는 核時代에 돌입하게 되고 核武器가 강대국의 전쟁수단으로서 國家安全保障에 기여할 것이라는 思考와 동시에 역으로 核武器가 諸國 國民 및 人類의 生存조차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核武器 기타의 大量破壞武器가 사용될 장래의 전쟁이 自國의 安全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人類를 絶滅시키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더욱이 敵對關係에 있는 多數의 강대국들이 다 함께 核武器를 保有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 처음으로 全面完全軍縮의 상세한 具體的 提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平和共存, détente의 時期의 交渉은 雙方의 힘의 균형을 기초로 한 部分的 措置만을 지향한 具體的 前進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 상황하에서 非同盟國을 中心으로 한 非核國家의 先制로서 SSD I, II가 개회되어 거기에서 거론된 軍縮措置의 기초에 包括的 軍縮計劃이 논의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全面完全軍縮을 지향하지만 部分措置도 중간단계에 정립되게 된다. 60년대의 全面完全軍縮構想이 核強大國 主導下에서 一國의 提

42)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e Arms Race and of Military Expenditures, A/37/386, (1983) par. 24.

43) 同書 par. 30.

案으로서 제시되는데 대하여 80년대의 包括的軍縮計劃은 核에 의한 人類絶滅의 위기의 進행과 限定核戰略의 展開 속에서 그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희생이 초래될 非核國家들의 先制로서 제안된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包括的 軍縮計劃은 국제연합체제를 활성화할 것을 필요로 하고 또한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여러가지 軍縮關係條約의 規定도 그것이 履行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 條約規定의 履行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軍縮條約도 條約法, 보다 광범위한 國際法의 一分野를 구성하는 이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Vienna 條約法 條約 26條)는 원칙에 좇아서 條約當事國은 그 規定을 遵守할 의무를 진다. 무엇보다도 條約의 實效性은 단지 그 原則의 要請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違反에 대해서 상대의 반응의 예상, 국제여론, 준수에 따른 損益計算 등의 要因에 의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國際社會에서는 국내사회와 같이 集權化된 법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당사국의 條約不履行에 대해서는 自助 기타의 집행수단이 취해져서 일정한 國際責任이 追求되게 된다.⁴⁴⁾

軍縮條約中の 軍縮措置의 실시나 위반의 방지는 당사국의 중대한 利害, 특히 그의 安全만이 아니라 國際社會의 安全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軍縮條約의 履行에 다른 분야이상으로 엄격한 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軍縮條約의 履行確保를 위하여 第三者에 의한 또는 國際的인 管理와 檢證이라는 방법이 보통 요청된다. 또한 만약 條約違反이 있다면 違反國에 대한 다른 當事國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대단히 엄격하여 自由의 至高的 利益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國家로서는 該當條約의 廢棄와 그로부터의 脫退라는 措置까지도 인정된다. 특히 최근의 軍縮條約에 특징적인 것은 條約의 目的과 規定의 遵守 혹은 運用에 관해서 검토하는 再檢討會議의 定期的開催가 예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軍縮措置의 履行確保의 문제야말로 대부분의 경우 軍縮條約의 成敗를 결정하는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가지 軍縮條約의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檢證, 再檢討, 會議, 廢棄, 脫退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軍縮條約에 廢棄와 脫退規定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軍備管理라는 성격을 반영한 이러한 條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대부분의 廢棄 脫退規定이 「自國의 至高的 利益」을 위태롭게 하였을 때 「그의 主權」의 행사로서 폐기 및 탈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오늘날까지의 軍縮條約의 취약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 軍縮條約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어떠한 締約國 脫退의 權利를 援用한 바가 없다. (이것은 각 條約의 再檢討會議에서도 확인되었다.) 全面完全軍縮에의 과정에서 정립된 진정한 軍縮條約이라면 물론 國際社會의 至高的 利益을 위하여 또한 核 위협 하에서의 人類의 平和的生存權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도 --當事國의 판단에 의한 廢棄 및 脫退는 용이하게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條約上의 規則이 아니고 一般國際法 내지 慣習法에 속하는 軍縮의 基本的 規則은 條約의 廢棄 및 脫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체제 하에서의 軍縮法體系(Soft law의 성격의 것도 포함해서)는 오늘날까지의 軍縮條約의 안이한 廢棄 및 脫退規定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規定이 때로는 援用된다 하더라도 붕괴되어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44) SIPRI,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 Security, (1977) pp. 13-14.

SALT交渉時의 檢證은 「協定當事國이 協定の 規定을 履行하는 程度를 決定하는 過程」이라고 定義되었다.

五. 核軍縮과 現代國際法

오늘날 安全保障과 發展의 觀點에서 軍縮은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平和的 變更의 要請도 그 촉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들 條件은 국제연합체제 하에서의 軍縮原則 내지 軍縮義務를 基底로한 軍縮國際法體系의 構築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要求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現代國際法の 새로운 展開도 軍縮法을 발전시키는 요건을 조성하였고 그 形成을 측면으로부터 촉진시키고 있다. 소위 平和的 生存權은 국제연합에 있어서도 國際法上的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要素로서 포함할 수 있는 「展開의 權利」⁴⁵⁾가 아직껏 그 내용과 法的 性格에 관해서는 一致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형성과정에 있다. 平和的 生存權과 發展의 權利는 개인이나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것을 人權으로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諸國의 軍備競争과 軍事化에 의한 人權의 광범한 침식작용의 진행속에서 이러한 權利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국가측이 軍縮의 義務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⁴⁶⁾ 교섭의 狀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軍縮條約交涉을 촉진시키는 힘은 核戰爭에 의한 人類破滅을 인식하고, 平和的 生存權을 비롯하여 人權의 옹호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국민의 소리를 결집한 國際輿論에 의거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輿論의 役割의 중요성은 이미 국제연맹시대에 “精神的 軍縮(Moral Disarmament)”라고 일컬어지고 인정되고 있었다. 국제연맹시대에는 軍縮會議에서는 戰爭宣傳의 방지 등의 知的 國際協力, 青年의 教育, 新聞의 協力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거론되었다.⁴⁷⁾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시의 유럽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국제관계의 악화를 여론이나 국민간의 협력에 의하여 방지하려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론이 더욱 중시되게 되고 적극적으로 軍縮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軍縮교육⁴⁸⁾과 매스미디어의 이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2차에 걸친 國際聯合軍縮特別總會(SSD I, II)의 개최는 이러한 여론과 이것을 결집시킨 조직체로서의 軍縮비정부조직活動에 힘입은 바가 크다.

軍縮條約을 중심으로 하는 軍縮法의 成立에는 原則적으로 諸國家의 意思의 合致가 필요하다. 특히 軍縮條約에 관한 國家의 意見과 意思는 국가간의 교섭을 통하여 또는 國際會議에서 표명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국가대표의 발언은 軍事同盟과 核抑制라는 구태의연한 「安全保障」觀과 「國益」에 근거하는 것에 기울어지고 있다. 따라서 軍縮法의 전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의 여론과 軍縮NGO가 각각 自國의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것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軍縮條約作成過程에 있어서 즉 軍縮交涉과 國際會議에 있어서 국가대표에 의한 의사의 표명을 감시하는 體制가 확립되고 특히 여론의 호소가 직접 국제회의 등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SD I (第1回國際聯合軍縮特別總會) 최종문서에 의한 NGO(非政府組織)의 공헌과 여론동원의 평가, SSD II (第2回國際聯合軍縮特別總會) 최종보고서에 있어서 世界軍縮운동의 決定은 이 점을 公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軍縮NGO는 그의 活動에도 불구하고 국제

4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CN. 4/1489.

46) 廣瀬善男 「國連と軍縮 - 法的分析とその現代的課題」
國際法外交雜誌 69卷 4,5,6合併號 明治學院論叢 180號

47) Memorandum from the Polish Government concerning the Attainment of Moral Disarmament, official No: C. 602. M. 240. 1931. IX in League of Nations.

48) UNESCO 주최에 의한 軍縮教育世界會議(1980)最終文書.

연합헌장71조 하에서 經濟社會理事會(ECOSOC)와의 관계를 갖는 국제연합NGO와 같은 지위도 갖지 않고, 국제연합의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있지 않은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⁴⁹⁾

軍縮은 오늘날 國際社會全體, 人類全體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의 교섭도 초강대국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모든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 한다. SSD I을 계기로 종래의 미국과 소련 중심과 같은 ENDC(18個國 軍縮委員會), CCD(제네바 軍縮委員會會議)로부터 다수국으로 구성되는 CD(제네바 軍縮委員會)에의 改組, 國際聯合을 軍縮을 위한 주요한 審議機關으로 하기 위한 總會第一委員會의 활용과 DC(國際聯合軍縮委員會)의 설치가 이루어졌다.⁵⁰⁾

이와 같은 軍縮交渉機構의 改革은 軍縮交渉의 촉진을 위해서도 또한 軍縮條約의 내용을 보다 전진된 것(全面完全軍縮에로의 적극적인 段階的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機構改革을 거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원활하게 軍縮世界의 실현을 향하여 추진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核威脅 속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自己의 生存, 궁극적으로는 人類의 生存을 인내력을 가지고 관철해 나가려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의지와 강력한 국내 및 국제여론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軍縮條約은 國家의 安全保障의 근본에 관련되는 것으로 違反 및 紛爭解決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소련간의 關係改善, 冷戰의 終焉 등에 의하여 미국과 러시아간에 있어서도 友好關係가 지속되고 대화를 통해서 紛爭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二國間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第三者의 개입을 예정하는 것은 今後의 軍縮條約의 履行確保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二國間의 交渉에 의하여 成立되는 軍縮條約이지만 그 成果 및 履行은 모든 國家의 關心事項이며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中立의 이고 客觀的인 國際機構 등의 관여가 장래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檢證, 査察 등의 國際機構의 關與와 결부되는 것으로 兩分野에 있어서 國際機構 등이 적극적으로 關與하는 것은 軍縮條約의 履行의 檢證 및 紛爭解決의 實效性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1. 李漢基, 「國際法講義」, 博英社, 1990.
2. 三枝茂智 「國際軍備縮小問題」, 原書房, 1932年, (復刻原本) 1975.
3. P·M·S·ブラケット(田中慎次郎譯) 「恐怖·戰爭·爆發 - 原子力の軍事的 政治的 意義」, 法政大學出版局, 1951.
4. 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 「軍縮とその經濟的社會的影響」, 國際問題シリーズ第25號, 第26號,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2.
5. D·G·ブレナン(小谷秀二郎譯) 「軍備管理·軍縮·安全保障」, 鹿島研究所,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3.

49) 軍縮에 관한 國際NGO로서는 1960년대에 설립된 Genève의 NGO軍縮特別委員會와 1973년 창설된 New York 國聯本부의 NGO軍縮委員會가 代表的인 것이다. 軍縮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가 注目되게 된 계기는 1974년 國際平和局의 Bladford Proposal 중에서 世界軍縮會議에의 NGO참가가 요청된 것이다.

50) 軍縮交渉機構改革의 意義について, 杉江榮一 「軍縮平和への選擇」, 新日本新書, 1982年 p. 197.

6. 日本政治學會編『軍縮問題の研究』有斐閣, 1967.
7. 谷田部厚彦『核兵器不擴散條約論 - 核の選擇をめぐる』有信堂, 1971.
8. 日本平和學會編『核時代の平和學』時事通信社, 1976.
9. 湯川秀樹・朝永振一郎・豊田利幸編『核軍縮への新しい構想』岩波書店, 1977.
10. 國際聯合事務局編『國際軍縮年鑑』外務省國聯局軍縮課, 1976年版(1977年) - 1979年版(1982年).
11. 外務省情報文化局『軍縮問題と日本』1982.
12. 山田 浩『核抑止戰略の歴史と理論』法律文化社, 1979.
13. 平和運動30年記念委員會編『シンポジウム 核時代と世界平和』大月書店, 1981.
14. 杉江榮一『軍縮 - 平和への選擇』新日本出版社, 1982.
15. 坂本義和『軍縮の政治學』岩波書店, 1982.
16. 嶋 武彦『軍縮と平和への構想 - 國際政治學からの接近』日本評論社, 1982.
17. 豊田利幸『新・核戰略批判』岩波書店, 1983.
18. 吉岡吉典『軍縮・平和・安全への道』新日本出版社, 1983.
19. 坂井昭夫『軍擴經濟の構圖』有斐閣, 1984.
20. 飯島宗一・豊田利幸・牧二郎編著『核廢絶は可能か』岩波書店, 1984.
21. Barandon, Paul, Le systeme juridique de la Societe des Nation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Traduit de L'allemand par Jean Labarthe), 1933.
22.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1951.
23. Hosono, Genji, Histoire du Desarmement, 1933.
24. Jack, Homer A., Disarmament Workbook The U.N. Special Session and Beyond, 1978.
25. Laszlo, Ervin and Keys, Donald(Ed), Disarmament The Human Factor, 1981.
26. Maeda, Hisashi, A View on International Disarmament Problems, 1979.
27. Morgan, Laera Puffer, A Possible Technique of Disarmament Control, Geneva Studies, Vol. IX. No. 7, 1940.
28. Myrdal, Alva, The Game of Disarmament How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Run the Arms Race, 1976.
29. Robles, Alfonso Garcia, The Denuclearization of Latin America(translated by Marjorie Urquidi), 1967.
30. Noel Baker, p. j., The Geneva Protocol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925.
31. Sloutzki, N. M., The World armament Race, Geneva Studies, Vol. No.I, 1941.
32. Toledano, Andre D., Ce qu'il faut savoir sur le disarmament, 1932.
33. Wilson, Hugh R., Disarmament and the Cold War in the Thirties, 1963.
34. League of Nations Conference for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Armaments, Conference Documents, Vol.I(Series of League of Nations Publications:IX. DISARMAMENT 1932. IX. 63.); Vol. I(IX DISARMAMENT 1936. IX. 3.)
35. League of Nations Conference for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Armaments, Preliminary Report on the work of the Conference, Prepared by

- the President, Mr. Arthur Henderson, (Series of League of Nations Publication: X. DISARMAMENT 1936. X. 3.)
36. 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s, Washington November 12, 1921 - February 6, 1922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2.
 37. Actes de la conference pour le controle du cmmerce international des armes et des marteriels de guerre, A. 13. 1925. X.
 38. Final Document of the Conference of Non-Nuclear-Weapon sates, 1968.
 39. Chemical and Bacteriological(Biological) Weapons and the Effects of Their Possible Us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969.
 4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 Final Document, 1977.
 41.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isarmament, Vols. I-VII, 1978.
 42. Comprehensive study on Nuclear Weap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980.